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5.4

작/역/사/목/탁/역/△/연/접/목

1995년 4월호 첫발행 92.5.25. 동권 29호 발행인 최현숙

우리네

아이들

95.4월호

<통권 29호>

짜

임

새



<표지사진 설명>

아이들이 놀고있다.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한데
어울려 맘껏 뛰놀고 있다.
아이는 아이다울 때 가장
행복한 것임을 그들도 알고
있는걸까...

- 일하며 생각하며 / 2
어린이의 삶, 교육, 권리를 위한 어린이 인권조약 이기범
- 기획 1 / 4
미국에서의 탁아제정 부담방식 이정희
- 기획 2 / 10
어린이집에서 하는 신나는 요리활동 오경민
- 좋은 책 소개 / 13
- 좋은 그림책 소개 / 14
- 지상강연 1 / 16
'아동의 권리조약' 해설 인권운동사랑방
- 지상강연 2 / 40
현장 중심의 교육 개혁안 전교조
- 지상강연 3 / 53
지역살림, 환경살림 이근행
- 작은 기획 / 56
"우리는 맘껏 뛰어놀고 싶어요!" 김광희
- 여러분 잠깐만 / 58
우리 그제 아이들인걸요 편집부
- 긴급진단 / 68
서울시 보육시설 운영개선 계획안에 대하여 최현숙
- 짧은 얘기, 긴 사연 / 70
- 건강하게 삽시다 / 72
탁아 선생님, 자신의 몸도 돌보세요 김철환
- 글마당 / 74
탁아소별곡 전달매동선
우리들의 목소리 윤영주, 박종혁
- 소식과 소식 / 78
- 탁아계 풍향 / 81
- 베품시장 / 83
- 편집부에서 / 84

■ 일하며 생각하며

어린이의 삶, 교육, 권리를 위한 어린이 인권조약

이기범 /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공동육아연구회

올해도 어린이의 달, 어린이의 날이 어김없이 돌아왔다. 사회와 각 가정에서 각종 행사가 활발하다. 매년 종류와 내용이 다양해지고 참가범위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행사가 어른들이 "우리는 너희를 잊지 않고 있단다. 오늘은 너희를 위하여 시간'쫄'은 내고 좋은 곳'쫄'은 데려가서 맛난 것'쫄'은 사주마" 하는 식의 알리바이는 아닌가 하는 자성이 들면 씁쓸한 마음이 든다. 그러한 알리바이를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인정해주고 있을까? 해가 갈수록 더욱 메달라가고 있는 어린이들의 삶과 교육은 방관하는 대신 1년에 한번쫄 어린이들을 위해 무엇인가 특별한 행사를 베푸는 선심성 공세는 이제 그만 두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사회가 진정 어린이들을 생각한다면 이제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삶과 교육의 주체로 되어 자기 성장의 자생력을 가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이다.

어린이를 삶, 교육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이 필요하다. 1989년에 유엔 총회가 제정한 어린이 인권조약이 바로 세계가, 그리고 각국이 적용해야 할 사회적·법적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결정체이다. 이 조약은 유엔 총회에서 투표없이 전폭적 지지로 채택되었고 다른 어떤 조약보다도 호응 회원국이 많은 조약으로서 1994년 현재 159개국이 비준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1991년 12월에 이 조약을 비준하였다.

어린이들이 인권조약이 명시하는 바와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너리가 어린이들의 이익(interests)을 보장할 수 있는 정당한 주장이나 타당한 주장을 확립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익이란 단순한 욕구의 충족이나 고통의 회피만이 아니다. 이익은 아무리 잠정적이거나 모호한 것일지라도 관심, 계획, 목표, 그리고 마음과 존재의 상태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친다. 즉 이익은 어린이들의 삶과 교육에서 "어떠한 계획과 과제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의 확보"를 뜻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익 보장 없이는 어린이들이 주체가 되는 삶과 교육의 근거가 상당히 손상될 것이다. 이익은 어린이들의 삶을 인간답게 만들며 교육을 의미있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의 보장은 어린이들의 인성과 인격형성을 위하여서도 꼭 필요하다. 그러한 어린이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권리의 핵심인 것이다.

어린이들의 의미있는 삶과 교육, 그리고 인격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즉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권리는 일차적으로 평등의 원리를 보장한다. 그리고 자율성의 규범적 가치를 존중한다. 자율성의 존중은 어린이들이 스스로에게 적절한 삶과 교육의 선택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은

어린이들의 의미있는 삶과 교육, 그리고 인격형성을 위하여는 어린이들의 평등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어떤 이들은 어린이에게는 어른의 사람이면 충분하지 무슨 권리냐고 반박할 것이다. 물론 이 반박은 타당한 점이 있다. 권리보다는 사람이 더 이상적인 도덕 가치를 지니고 있고 권리 이외에 더 중요한 도덕률도 있을 수 있으며 또 권리가 적절하지 않거나 적용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항상 조화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한 갈등의 경우 사람들은 서로에게 취약한 존재가 되는 데 있다. 어린이의 경우는 성인보다 더 취약하다. 권리는 이상적인 도덕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도덕의 "최저 기본선"을 제공하여 준다. 권리에 의하여 취약한 존재인 어린이들이 이익을 보장받고 평등하고 자율적인 존재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랑과 권리는 상호보완의 관계이다.

또 어떤 이들은 어린이의 권리가 인정되면 오히려 사회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깊어진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주장은 앞뒤가 바뀐 것 같다. 즉 권리가 갈등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사람들이 그들이 받았던 부당한 대우를 그저 조용히 참고 있었다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어린이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들을 위한 권리가 없었을 때 그들은 조용히 참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을 것이다. 어린이의 권리는 갈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무시되었던 갈등을 조정한다.

그런 필요성에서 1989년의 조약은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어린이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 그 권리의 방향은 어린이의 보호에서 어린이의 평등과 자율성 존중으로, 양육의 대상으로서의 어린이에서 자결권이 있는 어린이로, 그리고 복지를 위한 권리에서 정의실현을 위한 권리로 전환하였다. 이미 제시한 전보적 인식에 더하여 우리 사회도 어린이를 교육과 권리의 주체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과 지침을 갖게 된 것이다. 54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조약의 구체적 기준과 지침 중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알아보자.

먼저 조약의 일반 규정(1조-5조)이 어린이, 부모,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유의해야 한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조약은 어린이의 권리보장은 어린이 자신의 권리 행사를 기본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아동이 그러한 능력을 아직 잠재력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 혹은 충분히 권리행사를 하지 못할 경우 부모와 국가의 지도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조약의 실체적 권리의 내용(6조-41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조항은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어린이는 자신에게 영향을 줄 모든 사안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가 있다"라는 12조일 것이다. 이 권리는 사법, 행정 절차에서 어린이 의견의 청문을 보장하는 물론이고 부모의 이혼 반대권 등 어린이의 삶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 교육현장에서도 학칙의 제정과 개정시 학생의 참여권 보장과 학칙 적용시 학생의 소명 기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13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14조), 결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15조), 그리고 사생활의 존중(16조)은 기본적으로 어른과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들은 이미 이야기한 바와 같이 어린이를 실질적인 권리의 주체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조항들은 이러한 일반원칙과 권리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조항들이다.

어린이의 인권은 한때 "규정이 필요한 슬로건"이라는 말로 표현되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의 인권은 "실현해야 할 조약"이다. 세계화를 강조하는 요즈음 우리 사회가 어린이의 권리를 일상생활과 교육현장에서 얼마만큼 보장하고 있다가 바로 우리 사회의 세계화의 척도라는 것을 인식하고 모두 노력할 때이다.

■ 기획 1.

미국의 탁아재정 부담방식

이정희/정책연구부

지난 호에서는 미국에서의 탁아재정분담현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다룬 글을 소개하였다. 이번에는 몇가지 특징적인 공적프로그램을 보다 자세하게 소개하고 지난 호에서 다루지 않았던 기업원조현황과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소개할 공적 프로그램은 먼저,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법상에는 나와 있지만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 많은 연구자들이 지원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세금공제에 관한 부분을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Tax Credit인데 연방정부가 유일하게 확대 실시하려는 정책이다. 다음으로 가정탁아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평가받는 연방프로그램인 Child Care Food Program(CCFP)과 1988년에 입법화되어 미국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Family Support Act(FSA)라는 빈곤층가정 지원방안을 소개하겠다.

그러나 다시한번 지적해두어야 할 것은 지난호에서도 언급했듯이 미국탁아의 변화과정을 보면 한마디로 미국의 탁아정책은 일관된 정책의지없이 즉흥적으로 대응해서 '조각이불'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탁아현실은 카메르만과 칸이 지적했듯이 민영화, 탈규제화, 지방분산화를 향해 진행되고 있어 국가의 탁아에 대한 정책의지는 매우 낮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국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한 탁아정책모델로서가 아닌 사적시장중심의 영리화를 지양해야 한다는 점에서의 모범 사례이며, 미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지원방식속에서 우리현실에 적합한 재정지원방식을 모색하는데 함의를 찾는 것이 될 것이다.

1. Tax credit

Tax credit는 다른 지원형태와는 달리 미국정부가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다른 지원방식이 줄어드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의 폭이 증가하고 있는 지원방식이다. 또한 다른 지원방식이 그 대상을 선별화하여 지원하는 것에 비해 이것은 그 대상이 가장 광범위한 보편적인 성격의 지원방식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 세금원조방식은 1954년에 Tax deduction의 방식으로 출발하여 한가지 또는 다른 형태로 존재해 왔었는데, 1976년에 총아동보육비용의 약 20%를 공제해주는 아동보육비용

에 대한 세금 크레딧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 세금원조방식의 혜택은 1980년대 노동력으로서의 여성의 유입과 직업의 증가에 발 맞추어져 더욱 증가했다. 특징적인 것의 하나로는 dependent care services나 기업원조탁아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에서 225%나 대폭 확대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크레딧 산출방법은 좀 더 누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1982년에 바뀌어 현재까지 이 방법이 쓰이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통 미국에서 연간 드는 평균적 보육비용이 약 3,000\$정도인데, 여기서는 한 아이이면 2,400\$를 기준으로 하고 둘 이상의 아이는 4,800\$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그래서 아동양육비의 20%에서 30%까지 연방소득세로부터 공제할 수 있다. 연간 10,000\$ 이하를 버는 납세자는 인정된 지출의 30%가 크레딧이고 10,000\$ 이상 버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소득이 2,000\$ 올라갈 때마다 크레딧은 1%씩 줄어든다. AGI(adjusted gross incomes)기준으로 28,000\$ 이상인 납세자의 크레딧율은 20%이다. 납세자에 대한 최대의 크레딧은 AGI기준으로 10,000\$ 이하인 경우인데 한 아동당 720\$(30% x 2400\$), 둘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1,440\$(30% x 4,800\$)이다. AGI기준으로 28,000\$ 이상인 납세자에 대한 최대의 크레딧은 한 아이당 480\$(20% x 2400\$)이고 둘 이상인 경우는 960\$(20% x 4800\$)이다.

그러나 이 지원방식은 여전히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에 더욱 그 혜택의 폭이 넓어 탁아비에서도 이것이 경제적인 이충화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도시연구소가 현재의 아동보육세금크레딧의 분포특징을 조사한 것을 보아도 이것이 매우 소득역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체 수여된 크레딧의 단지 3%만이 소득분포에서 맨아래 30%에 있는 가정으로 갔다. 약 1/4가량은 분포아에서부터 50% 정도에 있는 가정으로 갔고, 75% 정도는 소득분포의 상층 절반에 있는 가정에게 주어졌다.

또한 크레딧에는 제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크레딧에 적절하기 위한 탁아지출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소득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결혼했다면 배우자중 낮은 소득을 버는 사람의 소득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만약 한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크레딧은 없을 수 있다. 이 제한은 크레딧의 목적이 소득에 손실을 줄 탁아지출을 줄이자는 것이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즉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손실을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크레딧을 주지 않는 것이다. 크레딧은 단지 한사람의 배우자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에게는 혜택을 줄 수 없도록 고안된 것이다. 만약 한 배우자가 다시 일터로 돌아간다면 다시 크레딧을 요구할 수 있고 가정의 수입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크레딧은 저소득층가정보다는 고소득층에 의해 자주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크레딧도 역시 다른 선별적인 재정지원방식과 마찬가지로 그 기저에는 복지정책적 사고보다는 노동정책적 사고를 가진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탁아세금크레딧은 탁아공급측면에서의 상당한 반응을 가져온 점도 있지만, The national center for policy analysis(Henderson, 1989)은 크레딧에 드는 40억\$의 89%가 정부에 노동관련세금의 형태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과 크레딧이 80억\$정도 GNP성장을 가져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 Child Care Food Program(CCFP)

시설중심탁아와 가정탁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연방프로그램으로서 CCFP는 미국농업국(USDA)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며 일종의 급식제공이라고 볼 수 있다. 보육을 받는 100만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두끼 식사와 한끼의 간식을 제공한다. 이 무료급식을 받는 아동의 약 2/3가 시설에 있는 아동이고, 이 시설에서는 자산조사가 적격성을 결정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거의 시설에 주어지고 자산조사를 거쳐서 준다.-일종의 보조다). 그리고 83,000개의 가정탁아소에 있는 400,000여명의 아이들이 무료급식을 받는다. 적격성이 있는 탁아소는 한아이당 매일 2.25\$까지 받으며, 이것은 부모에게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도록 보조하는 것이다.

CCFP는 저소득아동들에게 좀 더 나은 영양식을 제공하려는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목표의 부대효과로서 가정탁아소의 발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저소득층아이들이 가정탁아소에서 보호되고 있으므로 시설중심시설 뿐만 아니라 가정탁아소도 포함하도록 1975년에 법이 수정되었다. 가정탁아소에 대해 인가·등록이나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주들에서는 오로지 규제받는 가정탁아소만 이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어떤 규제나 법도 가지지 않는 주에서는 USDA기준만 만족하면 어떤 가정탁아소라도 다 자격이 있다. 이러한 공여(provision)는 가정탁아를 규제하지 않는 대부분의 주에서는 중요하다. 게다가, 가정탁아소를 이용하는 부모에 대해 자산조사를 하는 것은 불합리적이라는 것이 곧 명백해졌다. 부모들은 자신의 이웃에게 이러한 조사를 하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고, 부모도 역시 부모에게 자신들의 경제사정을 보고하는 것을 알려지는 것을 꺼려했다(탁아소에서 직접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도록 한 것 같다). 그러므로 1980년에 가정탁아에 대한 자산조사는 폐지되었고 급식보조는 모든 아이들에게 해당되었다.

특징적인 것으로는 전국적으로 840여개의 비영리 'food sponsor' 조직이 가정탁아소에 급식비를 분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가정탁아소가 비규제받기 때문에 이들을 찾아내는 어려움은 푸드기금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또하나의 심각한 문제였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비규제 가정탁아소가 지원받는 순서별로 지원금의 차별을 주어, 매달 최고 53\$에서 최저 28\$를 주었다. 급식지원조직은 10개의 가정탁아소에서 대략 4000개의 가정탁아소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영리조직의 직원들은 가정탁아소를 찾아내는데 책임이 있고, 만약 그 주가 가정탁아소에 규제를 받도록 하는 법이 있다면 이러한 가정탁아소로 하여금 규제를 받도록 권고하였고, 보조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감독하고 영양에 대해 지도하였다. 확실히 급식지원조직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탁아소를 등록시키는데 동기부여를 하였다. 규제아래로 가정탁아소를 이끄는 것은 질적 통제를 제공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보호하게 되기 때문이다.

3. Family Support Act(FSA)에 의한 탁아지원

FSA는 1988년에 입법화되어 현재 과도적 시행기를 거치고 있는 workfare프로그램이

며 주에 맡겨져 시행하고 있다. AFDC라는 복지혜택을 받는 부모들에게 직업훈련과 노동기회를 제공하여 복지의존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FSA는 AFDC부모가 이러한 프로그램에 등록해 있는 동안, 부모에게 주(state)가 아동보육을 책임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아동보호에 쓸 적절한 day-care vouchers나 직접보조금 등이 주어진다. Vouchers제도는 일종의 쿠폰제인데 기업체에서 특히 많이 채택하는 방식이다. 즉 기업체 자체에서 작업장이 소규모이거나 아동에게 좋은 환경이 아니거나 또는 기업체에서 행정적인 업무와 보육서비스를 위한 인력고용의 부담을 원치 않는 등 여러가지 상황과 이유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지는 않으면서 근로자들의 보육부담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여기서는 주정부가 쿠폰을 구입해서 보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예를 들어, 조부모, 친척, 보육교사, 민간보육시설 등 누구이든 보육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 방식은 주정부가 보육시설과의 계약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이 방법은 기업체에게 여러가지로 편리한 제도인데 보육비용만 지급하면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근로자의 보육부담을 도울 수 있어서 직원모집과 충원에 좋은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보육시설의 부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한편, FSA에서 특징적인 점은 이전보호(transitional child care)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매우 합리적인 지원방식인데, AFDC부모가 직업훈련이 다 끝나 직장을 갖게 되었을 때에도 1년까지 연장하여 아동보육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왜냐하면 대개가 복지혜택을 중단한 지 얼마 안되어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을 때 의료보험이나 아동양육비는 매우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직장을 갖게 되었을 때 초기임금의 거의 절반정도를 차지해 이들은 결국 다시 복지수혜자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정도 임금이 안정되고 생활에 정착할 때까지 아동양육은 물론 의료보험등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마련한 정책이다. 이러한 부가적인 조치는 workfare의 효과를 지지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현실적 사고에 입각한 보육지원방식이라고 보인다.

4. 기업원조현황과 방식

사적부문은 또한 탁아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서 점차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주들은 약 25,000개의 작업장에서 탁아benefit을 제공하는데 이는 전체의 1% 미만의 매우 저조한 참여이다.(작업장 중 병원이 가장 활발하다) 비록 노동자와 일반여론은 기업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랄지 모르지만, 고용주들은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직장보조의 탁아프로그램은 직장내에 시설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볼 때, 고용주에게 값비싼 선택이 된다. 그래서 기업은 다른 방법으로 탁아를 지원한다.

한편, 1987년에 소득수준이 25,000\$ 이상인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표적인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절대다수가 탁아에 대해 고용주가 좀더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탁아보조비를 원하는 사람이 58%, 직장탁아를 원하는 사람이 70%, 고용주가 탁아 조희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80%, 자녀를 탁아소에 보내는 것이 용이할 수 있도록 신축적인 근무시간을 원하는 사람은 84%이었다. 응답자중에서 실제 고용주의 탁아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4%에 불과했으며, 직장탁아소는 5%, 탁아조희서비스는 9%, 신축적 근무시간은 19% 등이 보조를 받고 있었다. 응답자 중 39%는 직장탁아가 제공되는 직장을 찾으면 직장을 바꿀 생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기업의 지원방법으로는 시설이나 가정탁아소와의 계약하에 voucher 방식, 탁아비용을 전부나 아니면 일부를 메우도록 되어 있는 환불프로그램, 세금내기전에 월급공제, 할인된 율로 사설탁아소와 들어갈 자리를 계약하기, 적절한 탁아시설을 찾기 위한 정보 및 참조(위탁)프로그램 등이 있다. 주로 고용주측은 탁아시설조치나 정보제공 등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 지원하려고 한다. 고용주측이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는 이유는 정부·언론·탁아 지지자들의 압력, 노동조합과의 협상때문이다.

노동조합은 탁아문제를 노-사간의 어떤 주변적인 관심사보다 더 핵심적으로 다루려고 하고 있으며 노동자-경영과의 관계에서 탁아이슈를 수용하는 경향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포괄적인 입법제정을 위해 정부재정의 증액을 위해 활발하게 캠페인을 벌이며 또한 이에 대한 해결책이 단체협상과정을 통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한다. 이에 노동조합은 직장내 탁아시설을 얻는 것이나 상당한 재정지원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것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에는 성공했다. 1) 탁아육구를 평가하기 위해 노사공동위원회를 세우고 대안적인 탁아형태의 가능성을 조사한다. 2) 지역사회 탁아교사를 선택하는 것에 관해 자원 및 위임프로그램을 만들기. 3) 노동자가 그들의 고용과 가정에 대한 책임 양자를 모두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신축적인 노동시간운영과 다른 대안적인 노동시간표를 채택하기. 탁아이슈는 단체협상의제에서 점차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의 탁아지원은 여러가지로 회사에게 이득을 준다. 고용인 이직율과 결근의 감소, 직업구인효과, 생산성 증가, 기업이미지 및 사기증진 등. 즉 고용주는 탁아지원에 대한 투자는 결국에는 매우 효율적인 비용이다. 실제로 탁아에 원조를 함으로서 이득을 본 기업들의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PCA, Inc., 사진회사. 이 회사는 비고용노동시장의 2-3%인 3,500명의 용모자를 받아 연간 노동자 보충비용중 30,000\$를 절약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 Nyloncraft, 인디애나 플라스틱회사. 이 회사는 전직율을 55%에서 10%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었다. * Merck Pharmaceuticals는 고용인의 부모 역할로 인한 시간과 아동보호휴가가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Intermedics, 텍사스 의료기구 제조회사. 지각과 결근으로 인한 연간 15,000시간을 절약해 노동시간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고용주의 대부분이 직장내에 탁아센터를 세우고 있지 않다. 종종 그들은 직장내 탁아소를 세우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한다. 고용주개입을 가로막는 것은 정보·인식의 부족, 그리고 앞서 언급한 탁아개입이 생산성을 증진시켰다는 자료화된 증거의 부족 등이다. 탁아프로그램을 이미 시작한 고용주들은 다른 기업이 아직도 변화하는 노

동력이 합의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부모 두 사람 모두가 일하는 가정이 이제 일반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들은 많은 고용주들이 탁아프로그램이 그들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다른 기업보다 빨리 시행한 IBM의 탁아프로그램은 노동자들에 의해 요구된 것이 아니었다. 회사가 노동력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연구를 분석해본 결과로 시작하게 된 것이었다.

참고 문헌

- * Arther J. Frankel, The Dynamicc of Day Care, Families in Society :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1991
- * Dorothy c. Miller, Women and Social Welfare-A Feminist Analysis, Praeger press, 1990
- * Susan Mann, "Family, Calss and State in Women's Access to Abortion and Day Care the Case of the U.S.", Family, Economy & state, 1986
- * U.S. Department of Labor, Child Care, A Workforce Issue, Task Force, Report of the Secretary's, April, 1988
- * Lorrain A. Dixon-Jones, The Child Care Guarantee in Welfare Reform, 1990

모임과 모임

'밖으로 나가놀자' 모임(어린이에게 자연을 물려주기 위한 모임)

'밖으로 나가놀자' 모임에서는 바깥과 자연이 주는 정서적인 측면과 교육적 효과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고, 각 어린이집의 주변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어린이집에서 하는 식물 기르기 사례를 나누었다. 계획은 상반기에 교사들의 자연에 대한 감각을 되살리기 위해 여러 자연을 찾아가기 활동과 실외놀이 프로그램 짜기, 하반기에는 놀이터 살리기, 환경문제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없어져버린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고 전 회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6월 공장 견학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니, 관심있는 선생님들의 참여를 권한다.

모임의 규칙은 월 회비 5,000원으로 회원의 자격은 정회원은 현직교사, 준회원은 관심있는 교사, 모임횟수는 2회(현장학습 1회를 원칙으로 한다)로 할 예정이다.

모임장 : 전경숙(용기중기어린이집 0331-294-3877)

모임총무 : 김량희(해송아기동지 762-9201)

■ 기획 2.

어린이집에서 하는 신나는 요리활동

오경민 / 영양사

1. 음식 만들기 활동(요리활동)의 의의

‘음식 만들기’는 어느 활동보다 다양한 교육효과를 갖는다.

가루에 물을 부으면 덩어리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고(관찰), 도구의 사용을 익힐 수 있으며, 측정·수세기 등 수·과학적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음식을 만드는 가운데 나누는 대화와, 만드는 순서표를 읽는 동안 언어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음식만들기 활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창조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창조물이 구체적인 음식이고,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것이기에 더 흥미진진한 것이 될 수 있다. 어린이집 여건상 어렵기는 하지만 그만큼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와 기쁨도 크다.

그리고 ‘음식’ 자체는 그 나라의 민족성을 갖고 있다. 문화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서양인이 육류와 빵을 즐기고, 우유에서 나온 치즈와 빵을 이용해 피자를 만들듯이 우리 민족은 녹두와 김치를 가지고 빈대떡을 만든다.

여기서는 되도록이면 우리 음식 만들기를 소개하겠다. 어릴 때부터 우리 음식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어릴 때 입맛과 식습관은 평생을 가기 때문이다. ‘음식 만들기’ 활동은 물을 가까이함으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실제 활동 사례

<잡쌀 경단>

재 료

새알심 - 찹쌀가루, 소금, 설탕
고물 - 팔, 카스테라, 콩가루, 흑임자

만드는 법

* 새알심 만드는 법

1. 찹쌀가루를 따뜻한 물로 소금간을 하여 익반죽한다.
2. 해놓은 반죽으로 새알심을 만든다.
3. 끓는 물에 새알심을 넣어 익힌다. 새알심이 물위로 동동 뜨면 익은 것이다.
4. 다 익은 새알심을 건져 찬물에 잠깐 담갔다가 건져낸다.
5. 고물이 팔고루 물어나도록 새알심을 고물에 굴린다.

* 고물 만드는 법

1. 팔은 삶아서 소금간을 약간 하고 설탕으로 단맛이 날 정도로 간을 하여 팻아 놓는다.
2. 카스테라는 체에 받혀 곱게 체를 내어 쓴다.
3. 인절미에 쓰는 콩고물을 이용한다.
4. 흑임자는 볶아서 팻아 체에 받혀 쓴다.

주의할 점

- 고물은 어린이집마다 골라서 쓰거나 다른 것을 이용해도 좋을 것 같다.
- 익반죽 하는 것은 뜨겁고 물의 양을 잘 맞추어야 하므로 선생님이 해주시고 아이들은 새알심을 만들고 고물을 입히는 과정을 같이 하면 될 것 같다. 고물을 묻힐 때는 찬 물에 담그어도 뜨거우므로 조심하도록 하고 쟁반이나 접시에 고물을 놓고 그 위에 새알심을 놓고 접시나 쟁반을 흔들어서 묻히는 것이 더 재미있어 하고 좋을 것 같다.

<와전>

재 료

참쌀가루, 대추, 쑥갓, 설탕, 기름

만드는 법

1. 참쌀가루를 따뜻한 물로 소금 간하여 익반죽하여 치댄 후 끈기있고 말랑말랑하게 반죽한다.
2. 쑥갓은 짧게 잎을 떼어 찬물에 담그어 둔다.
3. 대추는 돌려 꺾어 씨를 발라내고 0.5cm 정도 되게 채썰어서 끝패모양을 만든다.
4. 반죽을 직경 5cm 두께 0.4cm 정도로 둥글고 납작하게 빚어서 호떡모양으로 만들어 준 다음 아이들과 함께 대추와 쑥갓을 붙여 모양을 낸다.
보통은 둥글려 만들지만 대추와 쑥갓을 붙이는 것은 아이들 마음대로 붙이고 반죽크기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다.
5. 쑥갓과 대추로 모양낸 반죽을 후라이팬에 기름을 조금 두르고 지져서 한면이 익으면 뒤집어 익힌다. 반죽이 부풀어 오르다가 다시 꺼지면 익은 것이다.
6. 화전에 설탕가루 뿌려서 먹어도 좋고 설탕과 물을 동량으로 넣고 그 양의 절반이 될 때까지 약한 불에서 끓인 시럽에 담갔다가 먹어도 좋다.

주의할 점

- 참쌀가루를 매번 활동때마다 준비하기 어려우므로 한꺼번에 장만하여 냉동실에 보관하면 이후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 찬물에 담그어두면 쑥갓이 좀 생생해지는데 이때 아이들이 물을 엷지 않도록 주의한다.
- 대추가 너무 말랐을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에 약간 담궈서 톱톱해지면 쓴다. 이때 아이들에게는 썰어서 주는 것이 좋겠다.
- 시럽을 만들 때 젓지 않도록 한다.

■ 좋은 책 소개

“옛이야기 들려주기”

이 책은 옛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들려주고 싶은 교사를 위한 지침서이다.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즐겨 이야기하고 들어온 옛이야기를 오늘에 되살려 들려줄 때 어떤 점을 잘 살펴야 하는 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글쓴이는 오랫동안 어린이 문학을 연구해온 현직교사이다. 이 책에는 글쓴이가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늘 옛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확인하고 깨쳤던 점이 조목조목 실려있다.

글쓴이는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듣고 자라는 아이들은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믿고 있다. 옛이야기 속에는 착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누구나 티없이 맑은 마음을 지니고 있어서 어릴 때부터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면 자라서도 그 마음을 고스란히 지니고 살기 마련이다. 아이들은 옛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 속에 담긴 뜻도 배우게 되고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부모님과 선생님이 주는 사랑도 듬뿍 느끼게 될 것이다.

올바른 동화구연방법은 무엇인가?

그동안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동화, 곧 이야기를 들려줄 때는 무조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투는 안쓰는 것으로 알고 지냈다. 하지만 글쓴이는 그 점을 경계하고 있다. 어른들이 해주는 이야기가 아무리 현실을 다루는 내용을 담고 있어도 아이들은 자기들이 평소에 듣지 못하던 목소리로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연한 환상의 세계로 빠지기 때문이다. 옛이야기 속에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내용들이 담겨있어서 아이들에게 정직한 목소리로 들려주기만 하면 현실을 바르게 보는 눈을 키워줄 것이다.

옛이야기 들려주기를 읽으면 우리 말의 참맛을 맛볼 수 있다.

우리 말 만큼 어휘가 풍부하고 다양한 말맛을 살릴 수 있는 말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 우리 말은 우리 말다운 참맛을 잃어버리고 있다. 옛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잊고 지내던 우리 말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 책에는 글쓴이가 아이들에게 들려주면서 검증한 이야기가 구석구석 예문으로 실려있고, 책 뒷부분에는 글쓴이가 다시 고쳐 쓴 옛이야기가 열두개 실려있다. 바르게 고쳐 쓴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국어사랑을 백번 외치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서정오 글 / 도서출판 보리 / 6,000원>

좋은 그림책 소개

● 나는 누구의 아기일까요

원작 아브우치 마사유키 / 한림출판사 / 3,000원

“나는 누구의 아기일까요? 찾았다! 꼬꼬꼬 닭의 아기, 병아리지요.” 라는 글과 함께 앞장에는 병아리, 뒷장을 넘기면 암탉, 수탉과 병아리들이 무리지어 있는 그림이 나온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동물을 소재로 한 사물그림책으로, 동물 하나 하나를 세밀하게 그렸고, 동물가족이 어울려 있는 모습, 앉아있는 모습까지 사실과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서 좋은 책이다.

“누구의 아기? 아! 누구의 아기구나” 하는 물고 대답하는 형식과 반복 구성으로, 단순히 동물 하나하나를 보여주는 것을 벗어나 “엄마와 아기”라는 관계를 그림책을 통해 보여주어서 아이들이 더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그림책이다. 다만 외국 그림책이라 들소, 바다표범 등 우리 아이들에게 낯선 동물이 등장하는 것이 흠이며, 글 또한 “나는 누구의 아기일까요?” 보다는 “나는 누구일까요?” “난 누구?”로 바꾸는 것이 덜 어색하겠다.

그림책을 보고 아이들과는 “난 누구?” “난 순이” “난 울챙이반 영이” 하며 주고 받는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 1세 이상)



좋은 그림책 소개

● 알을 품은 여우

이사미 이무요 글, 그림 / 한림출판사 / 5,500원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아주 큰 알을 발견한 여우는 알에서 나오는 아기새를 잡아먹기로 하고 알을 품는다. 산 속 다람쥐와 새들은 어쩔 수 없어 걱정만 하고, 족제비와 오소리는 밤에 알을 훔치러 왔다가 여우에게 혼쫓이 나서 도망을 간다. 며칠이 지나 아기새는 알을 깨고 얼굴을 내밀고, 그새 정이 들어버린 여우는 아기새의 엄마(?)가 된다.

욕심많은 용감한 여우가 먹기 위해 품고, 뱉기지 않기 위해 지키는 동안 정이 흠뻑 들어버린다는 내용이, 여우 콧잔등에 앉은 아기새와, 아기새를 걱정하던 새들과 다람쥐들의 기뻐하는 마지막 장면만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 아기새를 걱정하는 새와 다람쥐의 모습은 그림책을 보는 아이들의 마음을 반영하는 듯 하다.

그림만 보더라도 내용을 읽을 수 있는 그림책으로, 낮과 밤을 잘 표현한 색채와 수채화 그림이 잔잔한 글의 내용과 잘 어울린다. 글의 양이 많고, 즐거리가 있는 이야기라 큰 아이들에게 적절한 그림책이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교사가 짧게 읽어주면 좋겠다. (4,5세 이상)



■ 지상강연 1.

‘아동의 권리조약’ 해설

인권운동사랑방

4월은 '장애자의 달'이고, 이제 어린이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네 아이들]에서는 지난 3월호에 이어 '아동의 권리조약'에 대한 전문과 해설을 실는다. 장애자와 어린이라는, 사회에서 소외받고 인정받지 못해온 두 계층을 떠올리며, 참다운 어린이의 권리를 생각해보는 5월 어린이날이 되었으면 한다.

‘아동의 권리조약’의 성립

지금 아동의 지위는 과거 노예나 여성의 지위를 닮았다. 그들은 자기자신의 권리를 갖지 않고, 한편 그들 대신에 자비롭게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해주실 '주인' 비호하에 있기 때문에 권리 따위는 필요 없다고 인식되어 있다.

1989년에 UN총회는, 1924년의 국제연맹 '아동의 권리선언(제네바선언)' 이래 65년만에, 그리고 1959년의 UN '아동의 권리선언' 이래 30년만에, '아동의 권리조약'을 채택했다. 그 배경에는 선진국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아동 환경의 악화가 있다. 즉 개발도상국에서는 5세 미만의 아동이 해마다 1,400만명이나 죽어간다고 하며 '절대적 빈곤'하에 있는 아동은 1억5000만명에 달한다. 선진국에서도 아동학대, 마약, 성적 착취, 소년범죄 등등이 넘쳐 아동의 문제는 심각하다. 지금이야말로 어른들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절망적이라는 절실함이 이 조약에 담겨 있는 듯하다. 아동을 분명히 권리의 주체로 못박은 이 조약은 아동을 '자비로운 주인'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크나큰 전진이며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량함과 아동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인간의 권리에 관한 모든 지혜를 결집시킨 세계사적 문헌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동의 권리조약’ 내용해설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규약 등 기존의 국제인권법도 (참정권 등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아동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이제까지 아동의 인권은 어른의 인권 속에 매몰되어 뚜렷이 인식되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 '아동의 권리조약'은 국제사회가 직면하는 여러가지 인권문제의 현실과 구조를 반영하면서 아동에게 특유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쓸모있는 기준들을 담은 법적 문서이다.

1) 일반규정(1조~5조)

① 특히 유의할 점은 '아동', '부모', '국가'의 3자관계에 관한 문제가 있다. 즉 우선 아동의 권리 보장은 아동 자신에 의한 권리행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 자신이 충분히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원조자로서 첫째로 부모의 지도권(내지 책임)을 존중하고 그런 후에 그 권리를 충분히 행사케 하는 보장으로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당사국에 원조 및 보호의무를 과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5, 18조).

② 조약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곳곳에서 강조되고 있다(전문 마지막 항, 4, 11, 21, 23, 24, 28, 34, 35조).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의 권리 침해를 구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그것이 각국 내의 노력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2) 실체적 권리의 내용(6~41조)

① 생명권·생존권·발전권(6조)

'조약'은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와 '발전의 권리'를 정하고 있다(6조). 이 생명권이란 타자에 의한 자의적 생명박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생존을 확보하는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당사국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8: 아동의 행방불명 방지와 관련, 24, 26, 27, 37조 등).

생명권은 절대불가결한 기초적 권리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에 더하여 발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대중매체에의 접근권, 교육을 받을 권리, 휴식과 '놀이'의 권리 등이 규정되어 있다(17, 28, 29, 31조).

② 부모, 가족에 관련되는 여러가지 권리(7, 8, 9, 10조)

아동을 양육할 일차적 책임자는 당연히 부모이다(18조). 아동은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7-①)." 따라서 조약은 우선 '신분

(아이덴티티)을 보존할 권리(8)', 부모로부터의 분리금지(9), 가족 재회(10)와 관련된 규정을 둔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부모의 지도권에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관점에서 일정한 제약을 가한다(19, 9-②, 20, 21조).

③ 의견표명권·시민적 권리

'조약'에서 가장 참신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아마도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일 것이다. 이것은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청문을 보장함(12조)을 물론 학교 교칙에 대한 반대권, 부모의 이혼에 관한 반대권 등등 아동생활의 모든 분야에 장차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 그 밖에도 표현·정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등 광범위한 시민권(13, 14, 15, 16조)이 기본적으로 어른과 똑같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것은 추상적인 권리주체로서의 아동에서 권리행사의 실질적인 주체로서의 아동으로 획기적인 아동관의 진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소년사법(司法)에 관해서도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었다(40조). 어른과 같은 형사절차상의 보장을 시민적 권리로서 확인함과 동시에 아동의 특수성에 맞는 조치를 규정한다.

④ 특별한 상황에 있는 아동의 보호

난민 아동의 보호·원조, 장애아동의 권리, 소수자·선주민 아동의 권리, 경제적 착취와 유해노동으로부터의 보호, 마약·향정신성 물질로부터의 보호, 성적 착취로부터의 보호, 아동에 대한 유괴·매매·거래 방지, 무력분쟁에 있어서의 보호 등 규정(22, 23, 30, 32, 33, 34, 35, 38조)은 오늘의 세계적 인권상황의 직접적 반영으로서 특별한(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의 권리들이 단지 일반원칙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극히 현실적인 해법까지 규정되어 있다. '조약'의 실천적 성격이 현저히 드러나고 있다.

3) 국제적 실시조치

당사국에 과해진 조약상 의무가 당사국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10인의 개인자격 전문가로 이루어지는 '아동의 권리위원회'가 UN에 설치된다(43조). 당사국은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이 조약에 규정된 권리의 실시를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이들 권리의 보장에 있어서 이룩된 진보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기초로 UN에 당사국 대표를 참석시켜 질의를 한다. 특히 이 '조약'의 보고 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① '위원회'는 UNICEF 등 전문기구와 협력한다. 이들 전문기구는 자신의 임무와 관련된 조약규정의 실시 여부를 '위원회'가 검토할 때 '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갖기도 하고(45조a) 당사국의 보고 및 '위원회'의 당사국들에 대한 소견, 제안을 송부 받아 검토하면서 당사국에 기술적 원조와 조언을 주기도 한다(45조b).

② NGO(특히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자격을 갖는 NGO)들은 "기타 자격이 있는 단체"로서 '위원회'의 작업에 일정정도 참가할 수 있다(45조a, b). 이것은 단순한 옵저버로서가 아니라 조언이나 원조를 요구받는 지위가 정식으로 인정되고 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위원회'의 역할은 조약의 실시상황을 감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 역할은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조직하는 데도 있으며(45조 첫 부분) UNICEF나 NGO들의 역량은 조약을 기초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이 조약의 국제적 실시과정에 있어서도 불가결의 것으로 되어 있다.

③ 당사국은 또한 '위원회'에 제출하는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44-⑥). 이 규정의 취지는 당사국이 보고서를 UN에 제출할 때 국내적인 문제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의 관련단체들과 널리 협의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마련하라는 뜻이다. 사전에 협의가 잘 되면 국내단체와 정부의 대립이 UN에서까지 계속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 정부는 이 점에서 아직 전혀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아동의 권리조약'과 정부의 의무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20일에 이 '조약'을 비준하였다. '아동의 권리조약'은 '조약'이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는다. 즉 우리나라는 이 '조약'에 맞추어 국내법을 정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 점에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아동의 권리조약'을 은폐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조약' 제42조의 "당사국은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는 규정은 분명한 '인권교육'이다. 또한 이 조약 28조 '교육에의 권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29조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몇가지의 '교육목적' 중에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 그리고 UN헌장에 정해진 여러 원칙의 존중을 발전케 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 역시 아동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미한다. 즉 아동에 대한 인권교육은 조약상 가입국의 의무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눈 씻고 살펴봐도 우리는 이런 '인권교육'을 찾아낼 수가 없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사무총장은 1993년 세계인권선언일 기자회견에서 "인권침해사실을 감추고 좋은 이미지를 선전하는 기술만이 세련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로 대한민국을 뽑았다('인권하루소식' 1994. 1. 13.)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조약

이 문서는 1989년에 UN에서 채택되어 대한민국이 1991년에 비준·가입한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대한민국 정부번역판인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한 것이다. 수정을 가한 부분은 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라는 명칭을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조약'으로 바꾸었고, ②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각 조항에 원래는 없는 짧은 제목을 넣었다. ③ 각 조문마다 원문에는 없는 약간의 해설을 덧붙였다.

< 전 문 >

이 조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헌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하였음에 유념하며,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없이 동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의 가족에게는 공동체 안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가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며,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23조 및 제24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

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하고,

아동권리선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념하고,

"국내적 또는 국제적 양육위탁과 입양을 별도로 규정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및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의 제규정, "소년법운동을 위한 국제연합최소표준규칙"(베이징규칙) 및 "비상시 및 무력충돌시 부녀자와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을 상기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은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함을 인정하고,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해설」

일반적으로 전문은 법령의 각 본조 앞에 배치되는 문장으로서 그 법령의 목적, 원칙, 취지 등을 선언하는 부분이다. 이것은 단지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의 지침이나 방향성을 가리킬 뿐 아니라 본문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법령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조약의 전문은 모두 13개 단락으로 이루어지나 내용상으로는 몇개의 덩어리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덩어리는 제1,2단락으로 이루어지며, 이 조약이 UN총회에서 채택된 것은 UN헌장의 원칙에 입각한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둘째 덩어리는 제3,4,6,9,10단락으로 이루어지며 이 조약이 인권에 관한 기존의 여러 국제문서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즉 이 조약이 세계인권선언(1948) 및 국제인권규약(1966)을 기초로 해서 성립되었음을 말하고, 또한 제네바선언(1924-국제연명 때), 아동의 권리선언(1959),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1986) 등과 관련이 있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셋째 덩어리는 제5,6,7단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동이 가족 및 지역사회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함을 말한 부분으로서 여기서는 가족이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기초적·자연적 환경이라는 것 그리고 아동이 사회 속에서 평화와 자유를 이상으로 하면서 사랑으로써 행복하게 키워져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개인·가족·지역·국제사회가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통일되고 그것이 이 조약의 기본원칙을 구성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마지막 3개단락(11,12,13단락)은 전세계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동들이 있으며 그들이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 아동의 성장에는 각국의 전통과 문화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 개발도상국 아동의 생활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된다.

18세기 후반에 미국과 프랑스에서 근대인권선언이 탄생된 후, 19~20세기를 통하여 인권사상은 전세계로 퍼져나갔으나 그 사이 인류는 여러 차례 비참한 경험을 했으며 그것은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계속되고 있다. 무력한 아동은 항상 이 비참을 직접 겪어야 했으며 이와 같은 비참한 상황은 현대에 있어서 더욱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조약'은 어쩔 수 없이 탄생했다. 이 조약은 어린이 뿐 아니라 어른을 포함해서 전 인류가 직면해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동서대결이라는 정치상황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협하는 위기적 상황은 기본적으로 없어지지 않고 있다.

이 조약은 이런 의미에서 인간과 인권을 다시 일무리부터 생각해보는 문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1 부 >

제1조(아동의 정의)

이 조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해설」, _____

'18세미만'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의이다. 그러나 '18세미만'이 출생부터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출생 이전(태아)단계에서 시작하는 지는 분명치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법률마다 '아동', '소년', '미성년자' 등 여러가지 표현을 쓰고 있으며 그 연령 정의도 법률에 따라 여러가지다. (소년법-만 20세 미만, 아동복지법-18세 미만, 청소년기본법-9세 이상 24세 이하, 근로기준법-13세 이상 18세 미만, 민법-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등등) 이런 것들을 이 조약을 근거로 정리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제2조(차별금지)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과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종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조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설」, _____

아동 자신의 여러 조건 뿐 아니라 그 부모 혹은 보호자의 여러 조건에 의해서도 차별 받지 않는다. 하위 법령이나 현실의 장에서 차별이 없는지를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 '빨갱이'인, 부모의 자녀에 대한 차별이 있을 수 있고 특히 '결손가정'의 아동이 알게 모르게 받는 차별이 있다. 여자실업고등학교를 졸업해도 '결손가정' 학생이 은행에 취직할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의 상식으로 되어 있다.

제3조(아동의 최선의 이익)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 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해설」, _____

'아동의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라는 표현은 1959년 '아동의 권리선언'에도 있다.

이 조약에서는 제9, 18, 20조 등에서도 되풀이 등장하는 말이며 이 조약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장래 축적되어 갈 실천 속에서 거듭 검토되면서 심화되고 또 분명해져갈 것이다.

제4조(권리의 실현)

당사국은 이 조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설」, _____

국제인권규약에서의 점진적 실시의무(A규약-사회권규약)과 즉시적 실시의무(B규약-자유권규약)의 구별이 이 조약에서도 관찰되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조약'에서는 사회권과 자유권을 확연히 구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며 이러한 이분법에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예를 들어 부모에 의한 학대로부터의 보호(19), 난민 아동의 보호(22), 경제적·사회적 착취나 성적 착취로부터의 보호(32~36), 무력분쟁하에서의 보호(38) 같은 여러 권리는 A에 속하는지 혹은 B에 속하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제5조(부모 등의 지시, 지도 존중)

아동이 이 조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해설」, _____

'확대가족(the extended family)'는 '대가족'이라는 번역도 가능할 것이다.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은 부모 및 기타 어른의 지도·감독은 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감독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아동은 어른의 사유물이 아니다.

제6조(생명에 대한 권리 및 생존과 참전의 확보)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록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성명과 국적을 가질 권리)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해설」, _____

아동은 출생과 동시에 즉 인생의 출발점에서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확고히 인정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국제적으로 이미 아동에게 고유의 권리로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제8조 (신분 보존의 권리)

1. 당사국은 위법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2.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제7조의 연속,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조.

제9조 (부모로부터의 분리 금지)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 또는 유기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4. 그러한 분리가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 또는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한다)등과 같이 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를 주지 아니하는 한,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부재중인 가족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관계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해설」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라는 표현은 관계당국이 사법적 심사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해서 아동의 의사에 관계없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첫째로 부모가 아동을 학대·방치하거나 부모가 별거중이어서 아동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권한이 있는 기관은 법에 정해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아동에게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둘째로 특히 나라에 의한 부모와 아동의 분리에 관해서는 나라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대응해야 한다.

제10조 (가족 재결합을 위한 출입국)

1.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적이며 인도

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러한 요청의 제출이 신청자와 그의 가족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이 조약에서 인정된 그밖의 권리에 부합되는 제한에 의하여만 구속된다.

「해설」

국경을 넘어 부모와 아동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나라가 다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제9조의 특수형태를 따로 조문으로 명문화시킨 것이다. 출입국 실무가 주로 ‘국적’이라는 관점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나라들(특히 일본과 같은 ‘제3국인’에 대하여 폐쇄적인 나라들)은 출입국관리법을 대폭 수정해야 할 처지에 있다.

제11조 (국외 불법이송과 미귀향에 대한 조치)

1. 당사국은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향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체결이나 기존협정의 가입을 촉진하여야 한다.

「해설」

‘미귀향’이라는 표현은 국외에서 국내로 귀환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퇴치(combats)’는 그런 불행한 상황을 없애기 위하여 분투한다는 뜻. 지국적인 규모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상황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 아동 역시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일이 흔히 일어난다.

제12조 (의견을 표명할 권리)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 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해설」

이 조약에서 가장 참신한 조항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학교에서 아동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through a representative or an appropriate body)은 “대리인 또는 적절한 단체”라고 번역해야 할 것 같다.

제13조 (표현의 자유)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여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나. 국가안보·공공질서·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해설」

"기타의 매체(any other media)"는 "기타의 수단"으로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단지 자신의 의견을 외부로 표명하는 것만 아니라 모든 정보를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매우 현대적인 표현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는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게 마련이지만 그러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등 애매한 표현을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제약을 가하는 일은 타당치 않다. 아동이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에 대하여는 관대해야 한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학생들이 도서관을 희망하거나 신문 등을 발간할 때 항상 학교 당국으로부터의 간섭이나 금지 때로는 징계를 받게 된다. 이런 상황들은 이 조약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제14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서는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해설」

종전 어른에게 고유의 권리라고 이해되어 왔던 이 전통적 권리항목이 명문으로 아동의 권리로 인정된 것. 2조항은 아동을 키우는 부모의 교육방식도 존중한다는 취지지만 역시 여기서도 부모는 무제한으로 감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감독을 해야 하는 제약을 받게 된다.

제15조 (결사와 집회의 자유)

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해설」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등 표현에 애매함이 있으나 어쨌든 아동의 결사나 집회에 대한 제한은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이 단체에 가입하는 일이 규제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바, 이런 상황은 이 조약에 위배

된다고 하겠다.

제16조 (사생활의 보호)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해설」

우리나라 아동은 일상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고 있으며 아동의 '명예', '신망'이라는 개념은 아직도 매우 생소하다.

제17조 (정보 및 자료를 이용할 권리)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가.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나. 다양한 문화적·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를 제작·교환 및 보급하는데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다. 아동도서관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라. 대중매체로 하여금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의 언어상의 곤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마.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해설」

'유익한 정보'와 '유해한 정보'의 개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판단에는 항상 미묘하고 곤란한 문제가 뒤따른다. 이 조항은 나라로 하여금 그것을 판단케 하는 것이 아니라 '장려'에 머물게 하고 있는 점은 중요하다. '유해', '유익'에 관한 판단에 권력이 개입하는 것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제18조 (부모의 제1차적 양육책임과 계약국의 지원조치)

1. 당사국은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2. 이 조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자격이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해설」

부모가 양육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나라가 그 조건을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3항은 아버지 뿐 아니라 어머니의 취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남녀평등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제19조 (학대, 방치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치·조사·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 (가정환경을 빼앗긴 아동보호)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보호의 대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이러한 보호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의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종교적·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가 배워져야 한다.

「해설」

3항에 말하는 "인종적·종교적·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는 자국인이 아닌 아동을 양자로 삼은 경우 그 아동을 양부모의 나라 시민으로서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제21조 (입양)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가. 아동의 입양은, 적용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친척 및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제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나. 국제입양은 아동이 위탁양육자나 입양가족에 두어질 수 없거나 또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 국제입양에 관계되는 아동이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호와 기준을 향유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라. 국제입양에 있어서 양육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적절한 경우에는 양자 또는 다자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테두리안에서 아동의 타국내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아동의 입양에 관한 구체적이며 상세한 틀이다. 우리의 입양제도가 이 기준에 맞는지 여부의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제22조 (난민아동의 보호 및 원조)

1.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 조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 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과 협력하는 그밖의 권한 있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들이 그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추적하는데 기울이는 모든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조약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해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혹은 특정한 사회집단의 구성원일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있는 공포를 갖기 때문에 국외로 도피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다(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제23조 (장애아동의 권리)

1.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신청에 의하여 그리고 아동의 여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적합한 지원이, 활용가능한 자원의 범위 안에서, 이를 받을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책임자에게 제공될 것을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3. 장애아동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며,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지원은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재산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의 가능한 전면적인 사회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 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당해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활, 교육 및 직업보도 방법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포함하여, 예방의학분야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의학적·심리적·기능적 처치분야에 있어서의 적절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배워져야 한다.

제24조 (건강과 보건서비스에의 권리)

1. 당사국은 도달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나.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무엇보다도 쉽게 이용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다.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라.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양양, 모유, 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

마.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는 조치

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배워져야 한다.

제25조 (수용된 아동의 정기적 심사)

당사국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 당국에 의하여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의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그밖의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제26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자력과 주변사정은 물론 아동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거나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과 관련된 그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27조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서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정의 범위 안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있는 자로부터 아동양육비의 회수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있는 자가 아동을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조약의 가입이나 그러한 조약의 체결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치의 강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28조 (교육에의 권리)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학교에서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을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조약에 부합하도록 운영

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적, 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해설」

이 조약의 '교육에의 권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도 주체적인 교육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즉 보장되어야 할 교육의 질까지도 요구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right to education)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정보인 여러가지 서류를 본인이 볼 수 있어야 하며 그 학교측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표명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제29조 (교육의 목적)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개발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헌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라.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2.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소수민족 또는 선주민 아동의 권리)

인종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제31조 (휴식·여가·놀이 및 문화생활의 권리)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32조 (경제적 착취 및 유해노동으로부터의 보호)

1.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그밖의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나.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다. 이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해설」

아동노동에 관하여는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24시간 편의점 등)의 노동조건이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제33조 (마약·향정신성 물질로부터의 보호)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부터의 보호)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아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을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나.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35조 (약취유인, 매매, 거래 방지)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보호)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라도 해로운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37조 (고문·사형 및 자유 박탈 금지)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나.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8조 (무력분쟁으로부터의 보호)

1. 당사국은 아동과 관련이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가능한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동 존중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야 한다. 15세에 달하였으나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최연장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 (심리적·신체적 회복 및 사회복귀)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 (소년사법)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

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자각을 촉진시키는데 부합하도록 처우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나.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1)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를 추정받는다.

(2)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후견인을 통지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3)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 부모 또는 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5)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6)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7)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가.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나. 적절하고 바람직스러운 경우, 인권과 법적 보장이 완전히 존중된다는 조건하에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루기 위한 조치

4. 아동이 그들의 복지에 적절하고 그들의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취급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그밖의 대체방안 등 여러 가지 처분이 이용가능하여야 한다.

제41조 (기왕의 권리 확보)

이 조약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권리의 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

는 어떠한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의 법

나.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 제 2 부 >

제42조 (조약의 홍보의무)

당사국은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제43조 (아동의 권리위원회 설치 등)

1. 이 조약상의 의무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전상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이 조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형평한 지리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를 고려하여 당사국의 국민중에서 선출되며,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최초의 선거는 이 조약의 발효일부터 6월 이내에 실시되며, 그 이후는 매 2년마다 실시된다. 각 선거일의 최소 4월이전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에 대하여 2월 이내에 후보자 지명을 제출하라는 서한을 발송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지명한 당사국의 표시와 함께 알파벳순으로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이 조약의 당사국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 선거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된 당사국 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을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초대 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얻는 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6.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는 재선될 수 있다.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중 5인의 임기는 2년후에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선거후 즉시 동 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7.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국민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

8.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9.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10. 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 본부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그밖의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위원회는 통상 매년 회의를 한다. 위원회의 회의기간은 필요한 경우 총회

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 조약 당사국 회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재검토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12. 이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44조 (채약국의 보고의무)

1. 당사국은 이 조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채택한 조치와 동 권리의 향유와 관련하여 이룩한 진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가. 관계 당사국에 대하여 이 조약이 발효한 후 2년 이내

나. 그 후 5년마다

2. 이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조약상 의무의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관계국에서의 조약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 포괄적인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제1항나호에 의하여 제출하는 후속보고서에 이미 제출된 기초적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4.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6.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 (위원회의 활동)

이 조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조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밖의 기관은 이 조약 중 그들의 권한 범위안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밖의 권한있는 기구에 대하여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조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밖의 기관에게 그들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이 조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모든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동 의견이나 제안과 함께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그밖의

권한있는 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다.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위원회를 대신하여 아동권리와 관련이 있는 특정문제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을 총회에 대한 권고할 수 있다.

라. 위원회는 이 조약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하여 접수한 정보에 기초하여 제안과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그 논평과 함께 모든 관계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46조 (서명)

이 조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47조 (비준)

이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8조 (가입)

이 조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9조 (발효)

1. 이 조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에 이 조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조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50조 (개정)

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동 제출에 의하여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붙이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일부터 4월 이내에 당사국중 최소 3분의 1이 회의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당사국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한 때에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밖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조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구속된다.

제51조 (유보)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시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접수하고 모든 국가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2. 이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발송된 통고를 통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고는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부터 발효한다.

제52조 (폐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를 통하여 이 조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제53조 (기탁)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조약의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54조 (정본)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서반아어권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조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전권대표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모임과 모임

국악과 전래동요모임에서

서양악기와 소리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 악과 소리의 맛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악과 전래동요에 대한 연구와 실제모음 작업, 교사들이 국악·우리 악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실기연수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릴적 엄마가 들려주던 동요가 아직도 귀에 맴돌고 있는 선생님, 동네 언니들 속에서 놀면서 배운 동요와 놀이를 기억하는 선생님, 풍물에 관심있는 선생님들을 기다립니다.

모임장 : 서은희(어깨동무어린이집 883-7326)

모임서기 : 박은하(진달래동산 0345-495-3962)

모임날짜 : 4월 26일 오후6시

■ 지상강연 2.

현장 중심의 교육 개혁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에서는 지난 3월 14일 [현장중심의 교육개혁을 위한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지자체 선거를 앞둔 이 시기의 교육의 문제점을 되짚어보며 아울러 이후의 대안적 교육체계를 거론한 전교조의 기자회견문을 전문 수록한다.

김영삼정부가 '변화와 개혁'을 슬로건으로 '교육대통령'을 자임하며 출발한지 2년이 지났다. 초기의 국민적 지지를 얻었던 '문민 정부'는 정권의 태생적 한계로 말미암아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고 표류하고 있다. '신경제 5개년 계획 → 국가경쟁력 강화 → 국제화·개방화 → 세계화·지방화의 과정으로 연설체제만 바꾼 재벌중심의 성장정책에 의존한 통치이데올로기로 기독교 세력에게도 다른 방패막이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따라 교육분야에서도 개혁의 주요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교육의 효율성 제고와 우수한 노동력을 생산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교육의 세계화와 산적인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육개혁의 의지는 실종되고 경제 논리에 입각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시장경쟁의 원리에 따라 교육체제의 효율성 제고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시도하는 교육개혁은 돈 안들고 수익자 부담에 의존한 정책이 주를 이루고, 국민적인 여론을 호도하고 개혁의 이미지를 창출하려는 이슈중심의 교육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정권 유지를 위해 여야합의로 개정된 통합선거법을 문제삼아 정국을 혼돈에 빠뜨리고 위기에 몰린 정국을 돌파하고자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밀실에서 몇 사람이 주무르는 '깜짝쇼'식의 교육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교육부와 교육개혁위원회가 산발적으로 제시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내용은 일정부분 교육현장의 문제 해결에 접근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이 우리 교육의 심각한 현실을 타개하려는 근본적 개혁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거나, 돈은 쓰지 않고 학부모의 사교육비와 수익자 부담의 논리로 포장하여 학생, 교사 등 교육주체와 학교간 경쟁을 강화하는 입시경쟁과 엘리트중심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이전 정권들이 안보와 경제중심정책으로 교육을 뒷전에 미루던 것에서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 오히려 세계화와 국제화를 부르짖으며 대책없는 교육시장개방과 기업경영방식을 교육에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교육개혁은 열악한 교육환경과 온갖 부정과 모순으로 왜곡되어 있는 우리의 교육현실을 결코 정상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교육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이 우선 확인되어야 한다.

첫째,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개혁의 올바른 방향과 참된 철학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최우선적인 과제와 방향은 우리 교육을 살리고 학생들이 참다운 교육을 받고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하는 교육조건을 만드는 데 있다. 학생들이 좋은 교육조건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교육개혁의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입시제도 개혁등 교육개혁의 주요 내용과 방향은 교육에 기업경영의 방식과 시장경제의 논리를 적용하려 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입시중심의 비인간적인 살인교육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경쟁 대열로 내몰아 숨막히는 점수와 서열 매기기 교육에 매몰시키려 하고 있다.

세계화를 외치는 문민정부에서 학급당 학생수가 세계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2부제와 복식수업마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 교실에서 50명 이상의 학생이 그것도 일부 국민학교에서는 2부제 수업과 복식교실에서 수업을 받으며 지식암기 위주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군사정권인 5공화국과 노태우정권에서도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환경 개선의 중요 지표로 여기고 꾸준히 매년 1-2명씩 감축하는 정책을 펴왔는데, 이것마저 김영삼정부에 와서는 중단되고 금년에는 베이비붐 2세대인 고등학교 신입생 수가 늘어나자 학교의 증설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학급당 학생수를 54명에서 56-60명으로 늘려 후퇴시키고 있다. 게다가 최악의 교육조건이라 할 수 있는 국민학교 2부제 수업과 복식수업을 아직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50명 이상의 붐나물 교실에서 국제경쟁력 강화와 세계화 교육은 물론 전인교육은 말뿐인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의 최대 현안인 학급당 학생수를 최소한 30명 수준으로 줄이려는 노력과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퇴색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교육개혁의 실천장은 교실이요 학교현장이다. 따라서 학교현장의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어떠한 교육개혁도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지금 학교현장은 전혀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교육현장의 교육주체는 교육개혁의 출발에서부터 배제되고 있다.

교육개혁의 초점은 학교개혁에 있고 교실을 바꾸게 하며 교사를 변화시키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교육개혁의 최종적인 실천과 산출은 어디까지나 교실현장으로 귀결되며, 학교현장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어떠한 개혁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역대정권이 교육개혁을 표방하고 솔하게 교육개혁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근본적 원인은 학교중심의 관점과 교사들을 교육개혁의 주체로 세워내지 못한 데 있다. 학교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들이 교육개혁의 입안에서 실천에 이르기까지 주체로 나서 앞장설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의 추진 방식에서 교사를 대상화하고 지시와 감독의 대상으로 여긴 교육관료의 권위적인 방식과 정권의 핵심에 있는 몇 사람이 의도한 교육개혁안을 밀어부치는 방식으로는 어떠한 교육개혁도 성공할 수가 없다. 교육개혁의 내용에서도 교실현장을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이고 학생들이 살 맛 나는 배움터로 만들고, 교사는 가르칠 맛 나는 교사로 만들기 위해 교사가 주체적으로 나서도록 학교운영을 민주화하고 교사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않은 한 진정한 교육개혁은 여전히 이를 수가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획기적인 교육투자로 교육환경과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교육에서 진정한 국제경쟁력의 확보와 세계화로 가는 교육개혁의 선결과제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교육재정 GNP 5% 이상 확보는 첫해부터 실종되고 국가의 교육투자보다는 사교육비에 의존하는 수익자 부담의 논리로 교육재정 확보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그

결과 교육개혁의 핵심과제인 교육환경 개선은 업두도 못내고 돈 안드는 제도만 손질하는 이슈중심의 교육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예산의 증가율은 1994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오히려 일반 예산의 증가율 13.7%에 못미치는 12.7%만이 증가되었다. 열악하고 낙후된 교육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교육개혁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확보는 GNP 5% 지수는쟁이나 벌이는 촌극을 벌인 바 있다. 획기적인 교육투자 없이는 국제화도 세계화도 인성교육도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교육투자 의지가 없다면 교육개혁의 의지가 근본적으로 실종되거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전교조는 위와 같은 방향을 기초로 교육개혁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금번 지자체 선거에서 올바른 교육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요구를 조직화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우선 전국연합, 민주노총준비위원회, 교육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교육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연대기구를 구성하여 교육개혁을 실질적으로 실천해 나갈 예정이며,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준엄한 반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전교조는 금번 지자체 선거 이후에 실시되는 교육위원 선출에 적극적으로 나서 제도권에서 교육개혁을 위한 활동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교육부, 교육개혁위원회 등이 전교조와 조속히 대화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1. 교육개혁의 7대 과제(방향)

- 가.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추구가 조화를 이루어 입시위주의 교육이 지양되고 학교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위해 고교입시를 부활하여 엘리트 중심 교육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폐지되어야 하며, 오히려 교육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제 및 입시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 나. 우리의 교육지표 및 교육환경을 최소한 우리의 국력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세계 10대 교역국 중의 하나인 우리의 교육현실은 공교육비나 학급당 학생수의 수준에 있어서 동남아 수준에도 못미치는 세계 최하위를 뽐내고 있다. 이러한 교육현실은 결국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을 확보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다. 교육자치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현행 교육자치제는 교육에 대한 주민참여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위원회가 예산, 조례안에 대한 의결권을 포함하여 교육학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갖는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바뀌어야 하며, 이에 따라 당연히 교육위원과 교육감은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 라. 단위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교육주체가 교육정책과 학교운영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각종 교육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어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

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와 교무회의가 법제화되어 자율성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 조직체계도 현재 부서체계에서 학년별·교과별 운영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 마. 교원양성 및 교원정책을 개선하여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신설하고, 실제로 학교교육에 대한 감지 역할을 담당해온 교육행정 및 장학제도는 폐지 내지 축소 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행 원로교사제도를 법제화하여 교내 연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교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대학원 진학·교원의 연수 등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 바. 통일을 대비하여 민족통일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부분에서 일제잔재와 독재잔재 청산을 위해 국민학교의 명칭을 바꾸는 등 교육전반에 걸쳐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 사.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 교육개혁의 구체적 내용

가.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의 조화를 위한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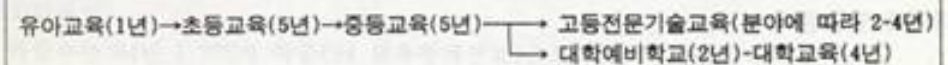
◇ 학제의 개편

● 현행학제의 문제점

- 현행학제는 대학입시를 정점으로 하여 초·중등학교의 교육활동이 대학진학에 예속되고 있으며
- 중등교육의 정상화와 유아교육 및 성인교육의 보편화가 미흡하고
- 실업계 졸업자에게 전문 고등기술교육의 기회가 보장되지 못하고
- 산업사회와 노동시장 조건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 개편안

- 현행 6-3-3-4의 학제를 아래와 같이 개편한다.



● 개선할 내용

- 유아교육의 보편화 추세에 따라 1년간의 유아교육을 기본학제에 포함시켜 의무 공교육화하여 국민학교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 초등교육의 기간은 1년 단축하여 5년으로 축소하고

- 현행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5년으로 의무교육화하며, 통합중등학교는 종합학교 형태로 보통교육을 실시하며
- 통합중등학교 졸업 후 기술교육과 대학진학을 위한 예비학교로 분리해 고등전문교육을 실시하며, 고등전문교육은 분야별로 특성화, 다양화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 대학진학은 대학진학을 위한 예비학교(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단축으로 생긴 2년간을 활용)를 거친 후 개인의 특성에 따라 일정한 전형을 통해 진학하며
-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기능을 확대하여 생애의 어느 시점에서나 자유롭게 수학할 수 있도록 기간학제와 방계학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운영한다.

* 학제의 개편은 교육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수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학제개편안 중 유아교육을 1년간 의무교육화하는 것은 당장 추진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 현행입시제도의 문제점

- 중·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으며
- 지역과 학교의 차이를 무시한 획일적 학과 중심의 내신성적 산출과 반영 비율의 강제적 적용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 본고사가 국·영·수 위주로 지식의 양을 평가함으로써 인해 과열 과잉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본고사에 대비해 보충·자율학습이 강화되는 등 학교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개선방안

- 대학입시제도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창의력과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대폭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선택 교과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 대학선발의 자유를 최대한 대학으로 위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 현행 국·영·수 위주의 지식양을 평가하는 본고사는 폐지되어야 하며, 대신 대학수학을 위한 종합적인 논리력과 사고력을 측정하는 종합논술고사로 대체되어야 하며
- 내신성적은 학생들의 성적에 국한하지 말고 학생의 학교활동과 교과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내신의 평가척도와 산출방식을 바꾸어야 하고
- 내신의 과목별 가중치나 반영비율은 전적으로 대학에 일임하여야 하며
- 수능시험은 종합적인 고등학교 학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시행하되 시험성적 반영비율은 대학에 일임한다.

◇ 고교평준화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가능한 지역으로 확대 실시 되어야 한다.

- 고교평준화 해제로 고교입시가 부활되면 중학교 뿐 아니라 국민학교까지도 입시교육이 확대되어 학교교육의 파행이 심화될 것이고
- 입시부활은 과잉을 확산시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중학교에까지 보충·자율학

습을 확대시켜 학교교육의 파행을 초래하며

- 고질 병인 일류병을 재발케하여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증대시키게 되며, 지역내의 학연과 계층간 갈등도 가져오게 되며
- 따라서 20년간 큰 무리없이 시행되어 온 고교평준화정책은 지속되어야 하며, 그간 평준화가 해체된 지역의 경우도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확대해 나가야 하며
- 평준화 해제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고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학생들이 스스로의 능력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 교과제가 전면 실시되어야 한다. (예, 영어과목의 경우 필수과목으로 공통영어와 선택과목으로 초급영어·중급영어 영어회화 등의 과목을 신설하여 학생들이 스스로의 능력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월반속진제 도입을 백지화하고, 입시교육을 부추기는 보충·자율학습은 폐지되어야 한다.

나. 각종 교육지표의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과 교육환경의 개선

◇ 학급당 학생수를 2,000년까지 30명으로 축소하고 거대학교를 축소하며 국교 2부제 수업을 완전 해소한다.

- 과밀학급의 해소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교육개혁의 출발점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하며
- 94년 학급당 학생수는 국민학교 37.7명, 중학교 48.9명, 고등학교 47.4명(국평가원 교육통계편람)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실제로 대도시의 경우는 대부분이 과밀학급이며-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학생의 숫자는 국민학교 약 120만명(전체 국민학교의 30%), 중학교 약 100만명(전체 중학생의 40%), 일반계 고등학교 약 40만명(일반계 고등학생의 33%), 실업계 고등학교 약 30만명(실업계 고등학생의 35%) 등 전체 학생의 34%에 이르고 있으며
-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국민학교에 40,602개의 학급, 중학교에 33,081개의 학급, 일반계 고등학교에 13,651개의 학급, 실업계 고등학교에 9,962개의 학급 등 97,296개의 학급이 증설되어야 하고(참고자료 참조)
- 이를 위해 향후 4년 동안 교실 증축비용으로 3조 9천억원 가량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며(교실당 평균 건축비는 교육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약 4천만원 정도임)
- 이에 따른 교사의 증원은 향후 4년 동안 약 16만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를 위한 소용예산은 매년 약 4천8백억원씩 추가 재원이 필요하고(연간 교사 4만명씩 증원, 교사초봉 연보수 총액은 94년 약 1,200만원임)
- 2부제 학급수는 94년 1,795개 학급(94 교육통계연보)으로 시급히 해소되어야 한다.
- 추가재원 확보방안 : 대통령령의 공약대로 교육예산을 GNP 대비 5%로 확보하면 가능

95년 교육예산(GNP 대비 3.68%)	12조 6,216억원
교육예산을 GNP 대비 5%로 할 때의 교육예산	17조 1,489억원
추가되는 예산	4조 5,273억원

참고자료(1)

세계 주요국 국민총생산액 대비 공교육비

국 가	기준년도	GNP 대 공교육비
한국	1994	3.68
이집트	1989	6.7
캐나다	1990	7.4
미국	1989	5.3
브라질	1989	4.6
일본	1989	4.7
말레이시아	1990	5.5
터어키	1990	3.1
프랑스	1990	5.4
영국	1990	4.9
호주	1990	5.4

UNESCO, Statistical Yearbook, 1993.

참고자료(2)

세계 주요국의 학급당 학생수

국 가	기준년도	초등학교	중등학교	
			중	고
일본	1985	33.3	38.1	40.3
대만	1986	44.0	45.2	48.9
영국	1979	26.3	21.6	
프랑스	1983	22.9	23.3	25.4
서독	1979	26.2	29.4	
한국	1994	37.7	48.9	47.4

- * 한국의 자료는 교육통계연람, 1994.
- * 외국의 자료는 거의 10년전의 통계임을 감안해야 함.

참고자료(3)

세계 주요국의 교원 1인당 학생수

국 가	기준년도	초등교육	중등교육
한국	1993	31.2	23.1
인도네시아	1989	23.3	12.9
터어키	1990	30.4	23.9
말레이시아	1990	20.4	19.1
브라질	1990	23.0	14.4
프랑스	1989	15.7	12.4
캐나다	1990	15.3	14.0
일본	1990	21.1	17.1

- * 한국의 경우는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3.
- * 주요국의 경우는 UNESCO, Statistical Yearbook, 1993.

- 과밀학급의 해소와 함께 거대학교의 문제도 심각한 상태여서 실제로 학교당 학생수가 많아 점심

시간에 학생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의 부족한 실정이고 체육시간이면 운동장이 부족하여 교실에서 수업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자료(4)

세계 주요국의 학교당 학생수

국 가	기준년도	학교당 학생수
한국	1993	715.9
인도네시아	1989	177.5
터어키	1990	134.4
말레이시아	1990	356.7
브라질	1990	138.5
프랑스	1989	94.0
캐나다	1990	194.1
일본	1990	377.5

- * 한국의 경우는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3.
- * 주요국의 경우는 UNESCO, Statistical Yearbook, 1993.

◇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아교육을 1년간 의무교육화하여야 하고 현재 도서 벽지 중학교에만 실시하고 있는 중학생의 의무교육도 전면 실시되어야 한다.

- 초기교육으로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는 있으나 실제로 유아교육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 유치원교육에 드는 사교육비는 1인당 124만원(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1994)에 이르고 있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크다.
- 그리고 보통교육을 확대하고 학부모의 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중학교까지는 반드시 의무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현행 학제로 할 때 10년간 의무교육 실시)

참고자료(5)

주요국의 의무교육 실시 연한

나라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동독	헝가리	유고	말레이시아	태국
연한	8-12년	10년	11년	9년	10년	10년	8년	8-9년	8-9년

◇ 모든 국민학생에게 무료로 급식을 실시해야 한다.

※ 설정이유

- 학교급식은 사회복지 차원의 문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 학교급식은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한다.
- 학교급식은 아동의 합리적인 영양공급, 편식의 교정, 식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습관을 기르는 교육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학교급식은 빈부의 차이를 뛰어 넘어 모든 아동들이 점심시간에 똑같은 식사를 하게 됨으로 계층의식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적 기능을 갖기도 한다.
- 특히 최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 근거와 소요예산

- 학교급식은 위와 같은 취지 때문에 서구 국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예를 들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1946년부터 무상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1966년부터는 7세에서 18세에 이르는 모든 학생에게 무료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1946년 전국학교급식법을 제정하여 국가 원조하에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국민학교 학생의 경우 99%가 학교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다.
- 1994년 10월 현재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현황은 전체 국민학교수 5,900개교의 38.0%인 2,252개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전체 국민학교 학생수의 24.0%인 983,738명이 학교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리고 급식이 이루어 학교도 극소수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익자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정부는 국민학교 학교급식 전면실시를 제14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설정하여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중(92-96)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97년부터는 학교급식을 전면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 약 8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편성해 운영해 왔다. 따라서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은 위의 비용으로 충당하여 내년까지 모든 국민학교에 급식시설을 갖춰야 한다.
- 그리고 학교급식을 무료로 실시하는데 드는 비용은 교육예산 증액분으로 확보해나가야 한다.

참고자료(6)

국민학교 무료 급식에 드는 비용

$$400만명(국민학생총수) \times 185일(토요일을 제외한 연간 평균수업일수) \times 1,000원(끼당 평균비용) = 연간 약 7400억원$$

◇ 학생들의 창의력을 발달시키고 체험 확대의 폭을 넓히기 위해 국민학교부터 순차적으로 주 5일제 수업을 실시하고 향후 중·고등학교로 확산해 간다.

◇ 농어촌 교육의 피해화를 막기 위하여 '농어촌교육 특별법'을 제정하여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농어촌의 경우 소규모학교라는 이유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무시한 채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학교를 폐교하고 있으며(94년의 경우 분교포함 320교가 폐교되었으며 95년에는 304개교를 폐교할 예정임:교육부 업무보고)
- 소규모학교의 폐교를 심지어 학교당 학생수 300명선까지 권장하고 있는 것은 위의 주요국별 학교당 평균 학생수와 비교할 때 천만 부담하며
- 따라서 '농어촌교육 특별법'을 제정하여 소규모학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 교육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교육에 대한 주민참여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교육자치의 실시

- 교육행정체계를 일반행정과 분리하여 교육위원회가 독립형 의결기관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 현재 시도의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교육관련 예·결산 의결권, 각종 교육에 관한 조례의 제정과 폐지 권한을 교육위원회 권한사항으로 이관해야 하며
- 교육에 대한 주민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선하여야 하며
- 교육전문가인 교사의 교육위원 피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 교육자치의 기본 단위를 현행 시·도에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해야 한다.

라. 단위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학교 자율성 확대

◇ 교장의 독선적 학교운영을 배제하고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하여 현행 교무회의와 교장, 교사대표, 학부모대표 등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법제화하여 상호보완적으로 단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방안

-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 교사대표, 학부모대표, 학생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 학교 재무운영 및 예·결산의 감독권과 교무회의에서 복수추천한 교장에 대한 심사권(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음)을 가지며
- 학교시설의 설치와 관리, 학생의 상·벌과 규칙의 제정, 학교행사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후원활동 등에 대해 심의 결정한다.

● 교무회의의 운영방안

- 교무회의는 교장, 교감을 포함한 전교원으로 구성하며
- 학교 예산의 심의 확정과 결산의 승인,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교과서 선택을 포함한 교과과정 에 대한 사항, 교원 인사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하며
- 교장에 대한 복수추천권을 가지며
- 산하에 예·결산위원회,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교장은 교무회의에서 복수로 추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권자가 최종 임용한다.

◇ 학교행정 조직체계를 현행 부서별 체계에서 학년별, 교과별 운영체제로 개편한다.

- 이를 위해 현행 교무부, 학생부, 연구부 등으로 조직되어 있는 학교 행정체계를 학년별, 교과별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 주임교사도 학년별, 교과별로 선출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며

- 소규모학교의 경우는 학교행정체계를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며
- 학교의 잡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무행정 보조인원을 배치한다.

◇ 교과서 검·인정제도를 폐지하고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며 단위학교에서 교과서의 채택은 교과별 위원회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야 한다.

마.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교원양성 및 교원정책의 개선과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

◇ 교원의 양성과 임용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원양성 및 임용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

- 교원양성기관인 교육대학, 사범대학의 교과과정을 개선하여 교직에 대한 전문성과 자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교원대학으로 통합하여 특수목적대로 육성하고 대학원 과정을 증설하고
- 교육의 수급과 맞추어 교대, 사범대의 정원을 조정하여 단계적으로 졸업생 전원을 교사로 임용한다.

◇ 교육위원회 조직 비대의 직접적 원인이자 단위학교나 교사에 대한 감시 기능을 담당해온 현행 교육행정 및 장학제도는 폐지 내지 축소, 조정되어야 한다. 대신 장학 기능은 학교별 교무회의와 교과위원회의 활성화로 교사 자체의 장학 기능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 교사자격연한제도를 변형한 형태의 수석교사제는 철회되어야 하며 현행 원로교사제도를 법제화하여 원로교사에게는 수업시수의 경감(12시간 미만)과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며, 교과 및 학생생활지도 등에 대한 연구기능을 담당하게 한다.

- 무분별한 수석교사제의 도입은 교직사회를 학생지도 보다 진급을 위한 경쟁의 장으로 내몰 가능성이 있으며
- 특히 2급정교사, 1급정교사, 선임교사, 수석교사 등으로 교사의 자격을 서열화하는 것은 교직의 특성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 따라서 현행의 원로교사제를 보완하여 원로교사에게 수업시수를 경감하고 교과 및 학생 생활지도 등에 대한 연구기능을 수행하게 하며
- 현행의 원로교사제와 주임교사제가 원활하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교원 정원 산정시 원로교사 0.5인, 주임교사 0.7인으로 계산하여 정원을 배정한다.

◇ 교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원연수와 재교육 기회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 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사에 대한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 교육대학원 진학 등 교사들의 재교육기회를 적극 지원하고
- 교사들의 자체 연수를 위해 연수년제를 도입한다.

◇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 94년 대졸 40세의 평균 연봉이 23,692,349원(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1994) 교사의 경우 40세(25호봉)의 연봉이 21,090,250원에 불과해 교사의 월급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 기본급에 해당되는 각종 수당을 본봉에 포함시키고 호봉 승급액수를 늘리는 등 교원임금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 교사의 봉급 수준을 사무관급(95년 사무관 1호봉 599,000원인데 교사의 초봉 484,000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바. 통일대비 민족교육의 강화와 일제 잔재의 청산

-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교육내용의 교류와 교사, 학생의 상호 방문이 이루어져 신뢰의 바탕을 조성해야 하며
- 교과서에 남북합의서의 내용을 수록하고
- 통일 이후의 국가상에 대해 제시하며
- 남북간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상호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며
- 해방 5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의 청산을 위해 국민학교(황국신민학교의 졸업말에서 기원)의 명칭을 ‘어린이학교’나 ‘초등학교’로 바꾸어야 하며
- 독재시대의 잔재인 국민교육헌장은 폐지되어야 하고
- 교육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민족자주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 각종 교수용어와 애국조희의 명칭도 변경해야 한다.

사.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학생들의 인권보장

◇ 교사의 당연한 권리이자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노동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 전교조는 이미 93년 9월 E.I.(세계교원노동조합 총연합)에 가입하여 세계적으로 합법성을 인정받아 왔으며
- ILO는 1993년 3월 제255차 이사회, 11월 제258차 이사회, 1994년 6월 제 이사회에서 결정 및 권고를 채택하여 전교조를 불법시하고 있는 현행법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정부는 법개정을 미루고 있으며
- 현재 ILO 가입국 중 교사의 단결권마저 인정하고 있지 않은 나라가 없고
- 96년 OECD 가입을 앞두고 노동법 등의 개정이 불가피하며
- 진정한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 수준으로 우리의 노동법을 개정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조합을 인정해야 하며
- 진정한 교육개혁을 위해서도 교원노조가 합법화되어 교사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실제로 교육개혁을 학교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각급학교 학생회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가 마련되어야 하고
- 한국이 1991년에 채택한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수준으로 각종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 단위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교사의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각종 교육관계법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 단위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결정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교육법 75조(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를 개정하고
- 유일 교사단체만을 인정하고 있는 교육법 80조와 시행령 36조 2항의 개정
-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국가가 독점하고 근거가 되고 있는 교육법 155조와 15조 등이 개정되어야 하며
-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법조항이 신설되어야 하고
- 이외에도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노동법 등에서 교사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는 각종 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

모임과 모임

두박치는 교사모임(그림책 소모임)에서

곰돌이 그림책(웅진출판 - 지금은 꾸러기 칸돌이<지경사>로 나가고 있음)을 보면, 곰돌이가 껌을 삼켜 풍선처럼 떠올랐다가 구름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이것은 너무 허구적이지 않은가? 상상의 세계라 하지만 비과학적이다. 과연 과학적인 잣대와 사실을 그림책에서 어느 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

분명히 곰돌이가 풍선처럼 떠오르는 것은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허구적인 것으로, 어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아이들의 세계는 공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공존한다. 어른이 만일 공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도깨비, 산신령, 말을 하는 동물 등 모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의 세계에서는 존재하는 것들이고, 어른은 이 공상의 세계를 인정하며 그 속에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무한히 길러줌으로써 아이들의 삶을 풍부히 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커서도 상상력과 풍부한 감성을 지닌 사람으로 자랄 것이다. 놀이를 스스로 만들고 하는 아이로 길러야 한다.

과학의 세계는 공상의 세계에서도 존재한다. 동물의 특징을 정확히 살려서 만든 캐릭터, 세심하게 그려낸 숲속에서 그 동물 캐릭터들이 살아 움직여 이야기를 만드는 데에 과학성이 필요하다. 비과학성이라면 대충 그려놔서 그 동물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혹은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과 볼 수 있는 눈을 흐리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닐까?

1995년 4월 8일 모임에서...

■ 지상강연 3.

지역살림, 환경살림

이근행 / 환경운동연합

오는 6월 27일은 지역살림을 꾸려 갈 일꾼들을 우리 손으로 뽑는 선거 날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살림을 책임질 도지사, 시장, 군수 등 기초, 광역자치단체장과 살림살이를 돌보고 주민을 대리하여 지방행정을 감시할 자치단체의원들을 선출하는 것이다. 정치가 정권장악으로 축재, 비리를 일삼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국민, 지역주민의 손을 떠난 추잡한 놀음판으로 전락하여 온 지난 세월을 말끔히 씻고 생활정치, 살림정치로 새롭게 태어날 더없이 좋은 기회이다. 본격적인 지역살림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지역살림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환경문제이다. 개발과 성장으로 파헤쳐지고 버림받은 우리의 환경이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체제와 그 속에서의 개인들의 상품소비생활은 환경이 나이지기는 커녕 우리와 우리 후대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를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환경문제를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지역살림에 주민 참여의 폭이 넓어져 생활과 밀접한 지역 환경문제가 많이 논의되어 지역환경을 보존하는데 큰 몫을 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실질적인 오염감시활동도 활발해질 것이고, 지역환경을 지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중앙정부보다 강력한 조례의 제정이 이루어지면 지역살림에서 환경이 가장 우선되는 정책을 펼쳐 가게 될 것이다. 이는 가까운 일본에서도 많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반면에 우려의 소리도 크다. 지방자치체의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현실은 중앙집권정부보다 더욱 개발과 성장에 손을 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자연히 환경은 뒷전에서 황폐화할 것이고, 지방정부는 눈에 보일 수 있는 성장위주의 정책을 지역의 자본과 개발사업자와 결탁하고 밀고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나 수질문제처럼 몇 개의 지방정부가 이해를 달리하는 환경문제는 지방정부간의 대립으로 중앙정부조차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도 많을 것이다. 심지어 환경개선의지를 가진 지방정부가 환경기초시설에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성장을 위한 개발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가능성도 많다.

아직도 부족한 지역의 환경의식수준, 오랜 중앙집권의 역사, 지방정부의 낮은 환경전 문성, 환경투자재원의 부족문제 등 지방자치체가 환경문제 해결의 실마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그것이 실질적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로
만드는 것은 바로 지역주민 당사자이다.”**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지금은 강력한 규제수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자체 초기단계에서는 중앙정부의 확고한 환경개선의지와 지방정부에 대한 지도, 감독, 조정과 지원의 역할이 중요하겠다.

지방자치의 말 그대로 지역살림을 지역주민이 꾸려 나가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정치적인 의미 뿐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로 만드는 것은 바로 지역주민 당사자이다. 지자체 실시 초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환경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이 틈에 개발업자들이 한몫을 잡는 혼란이 온다면 그때는 이 땅 어느 곳 하나 성하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환경위기가 올 것이다.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생산활동을 환경을 우선하고 생태와 친화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지역주민, 우리 국민 모두이다.

우선, 선거에서 환경의식이 있고 지역환경문제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역일꾼으로 뽑아야 한다. 그리고 단순한 행정, 의정감시 활동보다 적극적으로 지역환경을 살리고 가꾸는 일에 나서야 한다. 쓰레기를 줄이고 물과 에너지를 아끼는 개인적인 노력들도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의 정책은 큰 산 하나를 감아먹고, 넓은 갯벌을 순식간에 메워 버리고, 강물에 온통 독질을 한다.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 환경과 삶을 파먹는 이러한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난다.

환경이 살아야 우리가 살고 후손들이 산다. 지역살림은 지역을 살리는 일이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생활공동체, 환경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는 우리의 삶을 신명나게 할 것이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출발, 그 시작에서부터 모범적인 환경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곧 온 나라가 녹색의 땅에 맑은 공기와 물을 마시게 될 날은 '나의 손'에 달려 있다.

모임과 모임

영아탁아모임에서

영아탁아모임에서는 그동안 영아탁아소에서 한 교육계획안을 정리해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문건강교육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영아건강교육과정(초급)의 교육을 함께 듣고 우리 실정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모임연락 : 오운정(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275-8505)

모임날짜 : 5월 6일 오후4시

장소 : 어깨동무어린이집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공연마당
놀이마당
유아마당
전시마당
실내놀이마당
환경교육마당
올바른 먹거리 문화장터
어린이 건강 진단 및 상담

때 : 1995년 5월 5일(금요일) 이른 10시 - 늦은 4시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전철 2,3호선 교대역 하차)

주최 : 제4회 새날을 열어갈 아이들의 한마당 준비위원회

(. 서울교육대학교 중학생회, . 놀이연구회 '놀', . 스텝이, . 어린이도서관연구회,
. 친구작은도서관 서울지부,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 참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 작은 기획-자연과 어린이(2)

“우리는 맘껏 뛰어놀고 싶어요!”

- '용산가족공원'을 찾아서 -

김랑희 / 해송아기동지

「작은 기획」에서는 95년 한해 「자연과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아동들과 함께 갈만한 곳을 소개하기로 하고, 지난 3월호에 첫 안내를 한 바 있다. 일선 보육시설 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사뭇 그 반응이 궁금한 가운데 그 두번째로 '용산가족공원'을 소개한다.

서울의 중심인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하고 있는 해송아기동지는 정기적으로 매월 '작은 나들이'와 '큰 나들이'를 1회씩 나가고 있다.

늘 차량소음과 미상 돌아가는 기계소리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장소는 주위에 그리 많지 않다. 집 앞이나 근처의 놀이터는 물론이요, 자주 찾아가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도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기에 용산가족공원은 우리아이들이 달리고 달리고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뛰어놀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다.

미군용산기지 이전계획으로 미군 골프장부지 9만여평 위에 조성된 용산가족공원은 드넓은 잔디밭, 울창한 숲 사이로 마련된 산책로가 있어 사람들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연못 위에서 유유히 노니는 청둥오리와 거위, 수풀 속의 꿩과 다람쥐 등 아이들의 학습현장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놀이기구나 매점은 찾아볼 수 없으나 필수시설로서 벤치, 탁자, 음료수대, 그늘막, 안내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 조용하고 한가했으나 요즘은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해송도 매년 2회 정도씩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집 일년행사중 하나인 가족소풍을 계획하기에도 적당하다.

하지만 한가지 주의할 점은 지나치게 부피가 큰 놀이감이나 프로그램 도구는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과, 반드시 도시락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집에서는 공이라든가 간단한 운동기구를 가지고 가서 아이들과 즐긴다거나 그림 그리기 등의 미술 작업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곳이 다른 공원과 달리 가장 좋은 점은 잔디보호를 위해 쳐놓은 가로막이 없어 맘껏 잔디 위를 뒹굴며 놀 수 있다는 점이다.

골목골목까지 밀려오는 거대한 괴물인 자동차로 인해 뛰어놀 공간을 잃어버린 우리의 아이들. 그나마 그들에게 이러한 공간이 마련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가끔이나마 아이들에게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용산가족공원을 이용해보길 적극 권하고 싶다.



용 · 산 · 가 · 족 · 공 · 원

소재/서울시 용산구 용산동1가
문의전화/02)792-5661(용산가족공원 관리사무소)
교통편/ 지하철 4호선 영등포역 역세권
관람료/ 무료
유모차/ 연중무휴
관람시간/5월 06:00-18:00(10/1-3월말)
미점 05:00-19:00(4/1- 9월말)
주차시설/없음

■ 여러분 잠깐만

우린 그저 아이들인걸요

편집부



4월 15일(토) 오후 2시, 종로구 재동국민학교의 운동장. 하늘은 아직도 찌푸룩룩 하지만 그래도 4월 중순이라 그런지 햇살만은 따갑게 내리쬐는데, 그 하늘 아래 운동복차림을 하고 용기종기 모여있는 아이들이 있었다. 운동회가 빨리 시작하기를 기다리는 듯 무료한 몸짓들과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아이들. 언뜻 보면 "그냥 아이들"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소란스러운 모임을 좀더 가까이 다가가 보면 조금은 다른 표정들의 아이들을 보게 된다.

이날 바로 재동국민학교에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제 한신대 교수)와 참여연대(공동대표 홍성우 변호사)가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장애아동과 일반아동(비장애아동)과의 한판 어울림 "어깨동무 놀이 한마당"을 마련하여 이 학교 학생 129명과 같은 수의 정신지체아



동등 복합장애아들이 한데 어울려 어깨동무 친구가 되었다.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함께 통합교육 선언문을 낭독하고, 놀이연구회 '놀' (특수교육분과)에서 재미있는 율동과 놀이를 진행하면서 행사가 무르익는 가운데 아이들은 어느새 마냥 즐겁게 뛰어노는 친구로 변해있었다. 시선을 다른데로 돌리는 친구, 팀에서 이탈하려는 친구, 처지는 친구를 챙기는 작은 聖人들의 모습. 같은 장애아끼리 서로를 챙기는 모습...

누가 이들을 '어린이'가 아니라 '장애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회가 멀게만 느껴질 뿐이다. 적어도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어울려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권리 짧은 우리 어른들이 인정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 긴급진단

서울시 보육시설 운영개선 계획안에 대하여

1. 서울시 운영체제 개선안

保育施設運營 實態 및 問題點

■ 現 況

- 就學前 兒童(6세미만) - 922천명
- 保育對象 - 84천명(취학전 아동의 9%)
- 保育兒童 - 58천명(대상자의 70%)
- 〈保育施設〉 - 총 1,714개소
 - 구립시설 : 34천명(387개소) - 보육아동 59%
 - 민간시설 : 24천명(1,327개소) - 보육아동 41%
 - 놀이방(15인이하) 10천명(914개소)
 - 어린이집(16인이상) 14천명(413개소)
- 未保育 兒童 - 26천명(대상자의 30%)
- 運營支援
 - 구립 및 법인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50%수준
 -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 생활보호대상자 아동 : 보육료 전액
 - 가구당 월평균소득 80만원미만자 : 보육료 50%

■ 問題點

- 保育施設의 總對不足
 - 취학전 아동은 감소추세이나 맞벌이 부부 증가로 보육수요는 증가추세
- ※ 서울 : 보육시설 1,714개소, 보육아동 58천명, 미보육아동 26천명
- 동경 : 보육시설 2,291개소, 보육아동 134천명, 보육소충원율 85%

- 保育施設의 地域偏在度가 深함
 - 전체적으로는 부족하나 일부지역은 정원미달 운영
 - 저소득층 밀집지역 우선설치는 중산층지역 대부분 미설치
 - 526개 동중 147개동 보육시설 미설치

- 獨立施設의 私有化 傾向
 - 동일인에게 장기간 위탁으로 운영쇄신 미흡
 - 위탁부담금제 실시로 위탁해제시 반환요구

- 영아와 就學前 兒童 入所 差違
 - 영아보육 기피, 유아 선호
 - ※ 서울 : 2세미만 7.9%, 2세 17.2%, 3세이상 74.9%
 - 동경 : 2세미만 19.1%, 2세 17.4%, 3세이상 63.5%

- 優秀教師 確保 困難
 - 보육교사 월평균 급여 65만원(유치원교사 104만원)
 - 보육교사 이직률 49.9%, 초급대이상 졸업자 52%

- 保育料 負擔 過重
 - 2세미만 보육료가 높아 두자녀 동시입소시 부담 과중
 - ※ 2세미만 : 173,000원 / 2세 : 139,000원 / 3세이상 : 88,000원

- 多樣한 保育需要에 對處 未治
 - 16:00 이후 연장보육 기피, 일시보육제 미실시

保育施設 運營改善 計劃

基本方向

- 시설의 지속적 확충 ——— '97까지 확충 완료
- 운영체계 개선 ——— 직영제 도입, 공공성 확보
- 보육교사 처우 개선 ——— 우수교사 확보, 보육의 질 향상
- 운영비 지원확대 ——— 영아 및 장시간 보육 기반조성

施設擴充

■ 保育需要

- 취학전 아동은 감소하나, 보육대상 아동은 증가 -
- '95년도 보육대상 - 84천명 추정(취학전 아동의 9% 수준)
- 보육대상 아동 년도별 추계

(단위 : 천명)

구 분	'93	'94	'95	'96	'97
0 ~ 5 세 아 동	924	932	922	914	909
보육대상 아동	78	81	84	87	90
비 율 (%)	8.4	8.7	9.1	9.5	9.9

■ 保育現況('95. 1. 31 現在)

- 총 1,714개소 58,565명
- 구립 387개소 34,498명(개소당 89명)
- 사립 1,327개소 24,067명(개소당 18명)

■ 施設供給

◦ 擴充計劃('95~'97)

※ () 보육 아동수

구 분	계	'95	'96	'97
계	1,141 (32천명)	401 (12천명)	370 (10천명)	370 (10천명)
구 립	77 (6.8천명)	27 (2.4천명)	25 (2.2천명)	25 (2.2천명)
사 립	1,064 (25.2천명)	374 (9.6천명)	345 (7.8천명)	345 (7.8천명)

〈확충방향〉

- 미설치 147개동 우선설치
- 학교, 종교시설에 설치자금 지원 설치 유도

◦ 년도별 보육아동 전망추계

(단위 : 천명)

구 분	'93	'94	'95	'96	'97
보육대상 아동	78	81	84	87	90
시설일소 아동	43	58	70	80	90
보 육 율 (%)	55.1	71.6	83.3	91.9	100

◦ 년도별 투자계획('95~'97)

(단위 : 억원)

구 분	계	'95	'96	'97
계	462	162	150	150
국 비	95	35	30	30
지 방 비 (시 비)	367 (88)	127 (32)	120 (28)	120 (28)

■ 施設運營改善

■ 區立施設의 運營體系 改善

- 시설장 - 아동보육에만 전념
- 구청장 - 일소아동 선정, 보육료수납, 운영비 지원

【現 行】

- 구립시설은 법인·단체에 위탁운영(운영비 일부 지원)
- 시설장이 아동모집, 보육료 수납운영
- ※ 동일인에게 장기간 위탁으로 시설의 사유화 경향

【改 善】

獨立施設 直營으로 轉換

- 직영사 조치사항
 - 종사자 전원(4,000명) 공무원신분(기능직 6~10등급)으로 전환
 - 운영비 전액 구청에서 부담
 - 보육료 수납 및 입소대상 선정 구청에서 전달
 - 직제 및 정원 조정
 - 시 청 : 유아교육계 → 2개계로 확대
 - 구 청 : 가정복지과에 2개계 신설, 직영 어린이집 소요인력 정원 확보

• 시행 시기

- '95 신교시설 : 개원시 부터
- 기 존 시 설 : 위탁운영 기간 만료에 맞춰 하반기부터 단계별로 실시

• 추진일정

- 운영비 지원 기준 책정('95. 4)
- 직제 및 정원조정('95. 4~5)
- 종사자 채용(개원 1개월전까지)

■ 保育教師 處遇改善

【現 行】

- 열악한 근무조건(12시간 근무)으로 보육의 질 저하
- 낮은 보수(월 평균 65만원)로 이직률이 높음(49.8%)

【改 善】

- 보육교사 8시간 근무체제 확립(08:00~16:00)
 - 16:00이후 비 상근 교사 배치로 종일반육기반 조성
- 유치원교사 자격소지자 월 6만원 수당지급
- 중식비 지급(월 25,000원)

■ 保育料 輕減擴大

【現 行】

- 두 자녀 동시 입소시 보호자 부담가중
- 영아 보육료 지원-간식비 월 2만원(구비)

【改 善】

- 두 자녀 동일시설 입소시 한 자녀 교육료 50%감액

■ 0歲兒 保育特別支援

【現 行】

- 0세아 보육기피
- 0세아 5명당 자원봉사자 1명 지원

【改 善】

- 0세아 10명이상 보육시설 영아 전담시설로 지정 특별지원(80개소)
 - 간호사 1명 배치 0세아 건강관리
 - 0세아 담당교사 수당지급(월 5만원)

■ 長時間 保育 實質保障

【現 行】

- 1일평균 8시간 보육으로 이용자 불편초래

【改 善】

- 16:00이후 비 상근 교사 배치(아동 20명당 1명)하여 12시간 보육기간 조성

■ 一時保育制度 實施

【現 行】

- 정원초과 보육 불인정(긴급한 사정 발생시 일시보육 불가)

【改 善】

- 긴급한 사정 발생시 1개월이내 일시보육 허용
- 일시보육 아동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

■ 豫 算 措 置

- '95년도 기존 보육사업예산 범위내에서 조정 집행

■ 地方費 負擔 基準 設定

- 추가부담되는 지방비는 시비, 자치구비 공동부담(50:50)

■ 追加所要豫算(8개월분)

5,480백만원

- 0세아 보육특별지원(80개소) 726백만원
- 장시간 보육 실질보장(200개소) 1,344백만원
- 두 자녀 동시입소시 보육료 감액(5,000명) 2,300백만원
- 우수 보육교사 확보 1,120백만원

1995년 3월 31일 각 구청 가정복지과에 전달된 서울시 조정안

區立 어린이집 運營體系 改善 調整

시방침 제249호('95. 3. 15) 보육시설 운영개선 계획과 관련임.
구립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체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 시행코자 함.

■ 當初計劃

- '95신규시설 : 개원시부터 직영
- 기 존 시 설 : 위탁운영 기간만으로 맞춰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직영실시

■ 調 整

- '95신규시설은 직영 관리토록 하고
- 단, 위탁운영자를 기 선정하였거나 모집공고중인 시설, '95상반기 준공 시설은 제외
- 기존 위탁된 시설을 위탁기간 만료시 위탁체와 협의하여 위탁연장 또는 수탁연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직영
- 기존 시설의 위탁운영 제도개선
- 위탁운영자에 대하여는 매년 평가실시로 계약 연장 결정
- 위탁 부담금 폐지 및 이형보증보험 가입으로 위험부담 해소
- 정년제 실지로 운영채신(시설장 65세, 기타 종사자 58세)
※ 현재 정년 초과자는 '95. 12월말까지 연장

■ 保育教師 處遇改善

【現 行】

- 열악한 근무조건(12시간 근무)으로 보육의 질 저하
- 낮은 보수(월 평균 65만원)로 이직율이 높음(49.8%)

【改 善】

- 보육교사 8시간 근무체제 확립(08:00~16:00)
- 16:00이후 비 상근 교사 배치로 종일보육기반 조성
- 유치원교사 자격소지자 월6만원 수당지급
- 중식비 지급(월 25,000원)

■ 保育料 輕減擴大

【現 行】

- 두 자녀 동시 입소시 보호자 부담가중
- 영아 보육료 지원 - 간식비 월 2만원(구비)

【改 善】

- 두 자녀 동일시설 입소시 한 자녀 보육료 50%감액

■ 0歲兒 保育特別支援

【現 行】

- 0세아 보육기피
- 0세아 5명당 자원봉사자 1명 지원

【改 善】

- 0세아 10명이상 보육시설 영아시설로 지정 특별지원(80개소)
- 간호사 1명 배치 0세아 건강관리
- 0세아 담당교사 수당지급(월 5만원)

■ 長時間 保育 實質保障

【現 行】

- 1일평균 8시간 보육으로 이용자 불편초래

【改 善】

- 16:00 이후 비 상근 교사 배치(아동 20명당 1명)하여 12시간 보육기반 조성

■ 一時保育制度 實施

【現 行】

- 정원초과 보육 불인정(긴급한 사정 발생시 일시보육 불가)

【改 善】

- 긴급한 사정 발생시 1개월이내 일시보육 허용
- 일시보육 아동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

2. 서울시 개선안에 대한 약평

최현숙 / 본 회 회장

본 글은 95.4.14일 서울시 보육위원회 제출용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보육위원회가 철회됨에 따라 공개되지 못한 평가문이다. 서울시의 개선안에 대한 독자들의 생각을 정리하기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 서울시 개선안 평가에 임하기 앞서

이번 3월 31일 서울시 각 구청에 전달된 서울시의 구립 어린이집 운영체계 조정안은 정확한 현실진단 속에서 나온 개선안이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 서울시의 계획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기존의 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전반에, 그리고 전국적인 보육시설로 그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정책이 학계, 시설운영자, 시의회 의원 등 관련 당사자들은 물론, 보육시설의 이용자인 서울 시민에 대한 철저한 의견수렴의 과정 없이 진행된 것은 그 취지와는 상반없이 문제점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게 된다.

2) 서울시 국공립 개선안에 대한 제언

서울시는 구립시설의 사유화 경향, 즉 동일인에게 장기간 위탁함으로 인해 운영쇄신이 미흡하다는 것과 위탁부담금제 시설로 위탁해제시 반환을 요구하는 것, 장기보육·영아보육을 기피하는 문제 등을 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체계 개선(직영제)의 취지로 들고 있다.

그러한 서울시의 기본취지에서 본 보육사업의 현실진단에 따른 개선은 다음 두가지로 가질 수도 있음을 제안하는 바이다.

<기존체계 유지>

하나의 기존의 구립시설 운영체계를 유지한 채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렇게 중요한 정책이 관련 당사자들은 물론, 보육시설의 이용자인 서울 시민에 대한 철저한 의견수렴의 과정 없이 진행된 것은 그 취지와는 상반없이 문제점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게 된다.”

구체적인 운영의 예는 다음과 같겠다.

- 위탁선정에 따른 문제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

위탁 공고를 형식적이지 않게 한다. 즉, 위탁선정위원회 제도를 보육위원회 등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단위에게 이양하여 공정하고 신중한 심사를 하도록 한다.

또한 위탁시 위탁운영자가 부담하게 되는 위탁부담금제를 폐지하고, 중한 실책을 범했을 때 당해 법인에게 위탁을 하지 않는다. 한편 한 법인이 일정 지역내에 1-2개소만 위탁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도 가능할 것이다.

-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재위탁심사를 할 경우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평가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종합평가제도를 실시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공무원 임의대로 혹은 부분적인 평가로 심사하는 것을 방지한다.

- 기타 재정지원에서 보육료, 보육교사 인건비, 영아보육 등은 그대로 도입한다.

<국공립 직영제>

다른 하나의 방법이 큰 틀을 깨면서 현재 나온 서울시의 개선안에 따른 처방책이다.

직영제에 따른 문제점도 나름대로 나타날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대비가 필요 하겠다. 이를 위해서 좀더 대책을 강구하고, 필요하다면 시범적 실시를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서울시 종합적인 보육발전 개선안이 나와야 한다.

서울시 보육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관점이 서울시 보육아동에 있지 않고 운영체계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체 아동에 대한(국공립 뿐 아니라 전 시설에 있는 아이들) 개선안이 나와야 하며, 그것은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을 보장할 수 있는 전체적·종합적 개선안이여야 한다.

또한 개선안이 마련된 후 공청회 등 충분한 공개적 토론을 거쳐 수정과 보완의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 짧은 얘기, 긴 사연

[우리네 아이들] 3월호 작업을 거의 끝내고 있을 무렵에 지탁연 우편함에는 국제우편 한통이 꽂혀 있었다.

작년 5월에 주민자치연구소와 본 회에서 마련한 [한.일 보육운동 발전을 위한 심포지움]에 참석차 방한하였던 스즈키 쇼조 선생님의 귀한 편지였다.

지탁연 사무국 식구들만 보기에는 일본에 연수를 다녀왔던 교사들을 비롯해서 지탁연의 많은 식구들이 서운해하고, 또 일본 소식을 궁금해 할 것 같아 소식지의 지면을 통해 공개한다.

지탁연 여러분,

94년 연말에 신년인사를 받았으면서 한글을 못읽어 친구에게 번역을 부탁하는 사이에 1월 17일 고베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응에 쫓겨 편지 답장이 대단히 늦어졌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베에서는 많은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일하고 있었기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조직적으로 부흥하기 위해 주위의 일본사람들에게 제도 구제의 따뜻한 손길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구제 의원금이 오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은 따뜻한 원조가 송금되고 있습니다. 진정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연합회 활동성과가 상승되어 있다는 것을 돌으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말해주면 할 수 있는대로 돕겠습니다.

금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만나기를 바랍니다.

대판에서 사랑을 안고 스즈키 쇼조가.

地域'社会託児所'連合会の皆さんへ

1994年の年末に新年のご挨拶も受けとり、はげましのメッセージを受けとりながら、私はハンケルが読めないで、友人に辞書をあてがいついていながら、1月17日阪神地区大地震に見舞われ、その対応に追われていたうちにこの手紙への返事が大変におくれてしまいました。お許し下さい。

神戸には沢山の韓口、朝鮮の人たちが居住し、住んでいましたので大きな被害にあっています。この人たちは組織的に生活復興の仕方に立ち上がり、周囲の日本人にも救済のあてがいの手をさしのべられています。皆さんの国からも義援金が出されました。国境を越えてあなにかい援助がとびけられています、本望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皆さんの連合会の活動の成果が上りつ、あなことを聞きあふんでいいます。私たちの方からとばかり申しつけて下さい、できるだけのことをするつもりです。

また今度もどうぞよろしく、そのうちお会いしましょう。

大坂より後を記して 鈴木祥蔵

■ 건강하게 삽시다

탁아 선생님, 자신의 몸도 돌보세요.

김철환 /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얼마전 탁아소에서 일하는 예쁜 처녀 선생님께서 외래에 찾아오셨습니다. 몇 달 전부터 피곤하고, 체중이 빠졌는데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병원에 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분에게는 불행히도 폐결핵과 꽤 심한 빈혈이 있으셨습니다. 과로가 겹쳐져서 건강 상태가 나빠지니 결핵균의 활동이 왕성해졌고, 결핵이 있는데다 영양섭취가 나쁘니 빈혈이 심해진 것입니다. 다행히 이분은 치료를 잘 받아서 좋아졌지만 그동안 이분이 고생하신 것이 아이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결핵균을 전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필자가 탁아소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건강에 대한 역학조사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선생님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그래서 실제 병을 앓고 있는 분들도 꽤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두 아이 돌보는 것도 힘든데 많은 아이를 충분히 쉬지 못하고 돌보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지만 선생님들의 몸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지키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킨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리하십시오.

먼저 건강을 위해서 해서는 안되는 것이 4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담배요, 둘째는 과도한 술, 세째는 짠 음식, 네째는 과로입니다. 한강다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튼튼하게 짓기도 해야 하겠지만 다리에 치명적인 40톤 이상의 차가 못지나가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술을 과하게 들었다면 3일은 쉬어야 하고, 며칠을 무리했다면 그만큼은 휴식을 취하거나 가벼운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담배는 피우지도, 말지도 말고, 싱겁게 먹는 것은 어릴 때부터 습관화되도록 하십시오.

다음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4가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일,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일, 신선한 채소와 영양이 골고루 들어있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먹는 일,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일입니다.

“바쁜데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고 항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운동

과로에 건강을 해친 보육교사,
그동안 고생한 것이 아이들과 주변사람들에게
결핵균을 옮겨줄 수밖에 없었다니...

복 입고 뛰고, 등산하고, 수영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는 분들은 자신의 조건에 맞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5분 정도 학교에서 배운 체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운동인지 모릅니다. 혹은 아이들과 윗몸일으키기를 10번씩 하면 재미있고, 유익한 운동이 됩니다.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자신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있는지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규칙적인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 지는 선생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아이들만 챙기지 마시고 선생님들도 맛있게, 천천히, 즐겁게 드십시오. 아침식사 거르지 마시고, 조금 살이 찌는 것을 부끄러워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이어트 하는 날씬한 여성(의학적으로는 뼈적 마른 여성) 중 상당수가 빈혈 등의 병이 있고, 신체 면역 기능이 떨어져 감기나 결핵 등의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원감님이 배려를 하시든지, 아니면 스스로 부담해서 검진을 받으십시오. 사람마다 검사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계산하기 힘들지만 젊은 여성의 경우 보통 4-5만원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건강검진을 꼭 검진 전문기관에서 해야 좋은 것은 아닙니다. 평소 다니시는 병의원이 있다면 그 곳이 가장 좋고, 아는 분이나 가까운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다고 하면 보험혜택을 주지 않으니 있는 증상을 얘기하시고 아울러 건강체크도 같이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방법은 검사 전에 의사의 상담과 진찰을 받으신 후 누구나 해당되는 몇 가지 검사를 받게 됩니다. 보통 흉부엑스선, 빈혈검사, 간기능검사, B형간염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결혼하신 분은 자궁암검사 정도가 필수적인 검사이고, 증상에 따라 검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종합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생님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만한 몇 가지 사항을 적어보았습니다. 스스로의 건강을 스스로 지켜내야 합니다. 제가 주로 신체적인 건강만을 얘기했지만 아마 더 중요한 것은 따뜻하고, 넉넉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지요. 이 귀한 선생님들의 마음을 담은 몸이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글마당

탁 아 소 별 국

[진달래동산] 편

이야기 하나, 할 얘기

나무 블록을 자신이 다 치우기로 약속하고 모두 꺼내놓은 사린이가 놀이에 심증을 내고 다른데로 놀러 갔다. 장난감 치우는 시간이 되어 사린이를 불러서 치우라고 했지만, 사린이는 한 귀로 흘리고서는 다른 놀이를 시작했다. 결국 약속을 어기고 또 장난감 치우는 시간에 탄 짓한 댓가(?)로 한 곳에 서서 벌을 섰다. 한참 뒤에 사린이가 선생님께 할 얘기가 있다고 했다.

사린이 : (눈을 동그렇게 뜨고서) 선생님 할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 할 얘기가 뭐예요?

사린이 : 할 - 얘기로.

선생님 : 그래, 할 얘기가 뭐냐고.

사린이 : (달당하다는 표정으로 기웃거리며 조용히) 할 - 얘기로.

선생님 : 정말 선생님한테 할 얘기가 뭐예요.

사린이 : 할 - 얘기로, 할 - 얘기로...

이야기 두들, 요즘 우리 사격요

새까맣고 둥글둥글한 온지, 씨익 웃는 미소가 매력인 장현이, 이 5살 동갑내기진 진달래 동산의 활짝 커플이다.

봄날 어느 점심시간.

장현이 : 선생님, 나 이거 없어요.

선생님 : 뭐가 없어요?

장현이 : 이거 돈까스에 뿌리는 거 없어요.

선생님이 가서 보니 장현이 돈까스에 케첩이 많이 있었다.

선생님 : 있네, 뭐.

장현이 : 온지가 없어요.



이야기 세엌, 난 그런거 안만들어요

철사로 만들어진 뼈대에 찰흙을 붙여, 우리 몸 만들기를 하고 있었다.

그주 내내 남자와 여자에 대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남,여의 몸생김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작업을 했다.

지용이(5세 남아) : 선생님, 다 했어요!

선생님 : 응..., 어디보자. 찰흙을 잘 붙였네. 근데 이거 남자니 여자니?

지용이 : 아빠예요.

선생님 : 아빠야? 키가 크네. 근데 턱 뾰뾰얏 음성은 안 났었어?

지용이 : (만들기 한 것을 던지듯 놓고 가며) 난 그런거 안만들어요!

마지막 이야기, 신랑은 신부들...

따뜻한 봄날.

몸을 간지럽히는 바람을 찾아 김밥을 싸들고 원곡공원에 놀러갔지요. '김치'하며 이 몸짓 저 몸짓을 지으며 사진도 찍었어요.

계단에 용기종기 모여 잠깐 땀을 식히고 있는데, 아! 이게 뭐가?

야외촬영을 하는 신랑아저씨와 신부아줌마가 진달래 친구들 눈을 자극했어요.

갑자기 형제가 큰 소리로(그러나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신랑은 신부들 사랑하니까?" 하는거예요. 사진을 찍던 신랑아저씨의 얼굴은 봄볕에 몸을 드러낸 딸기보다 더 빨개졌어요. 그 덕에 진달래 친구들은 새 출발하는 아줌마·아저씨의 비디오테이프 물론 인생 출발선에도 찬조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 우리들의 목소리

요리는 즐거워!!

윤영주 / 해송 아기둥지 교사

우리집은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사고방식을 가진 아버지와 자유분방한 어머니 사이의 끈임 없는 싸움의 연속이다. 태어나서 한번도 설거지를 해보지 못하신 아버지와 맛벌이지만 항상 집안일의 모든 부분을 도맡아하시는 어머니 사이에서, 나의 좌우명은 '남자도 가사일을 분담해야한다'이다. 하지만 어릴때부터 오빠는 저녁시간이 아무리 늦어도 스스로 차려먹을 줄 몰랐고, 그때마다 언니나 내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정상 늦게 들어왔더라도 야단을 맞아야 했다. 그것을 감수해야하는가? 아니다. 그래서 항상 오빠와 나에 대한 대우를 불평하게 되었고, 집안에서 나는 '평등'한 집안에 대해 편서리 '불평등'이니 '차별'이니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

오빠가 대학에 가고 얼마후 군대를 다녀왔다.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의 흐름 뒤에 우리집에도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저녁을 차린 나에게 오빠가 하는 말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할게", 늦은 귀가뒤 아버지 스스로 차려드신 밥상, 세탁기를 돌려만 놓고 바빠 나가야되는 나에게 "내가 널게"하는 말들..... 그동안의 내 불평들이 하나씩 하나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달라지게 된 원인은 불평 때문은 아니었다. 오빠의 경우, 군대가서 이러저러한 고생(?) 다 하고 나오니 '설거지 쫌야'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자기가 먹은 그릇을 씻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전엔 어머니 외전에 반대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아버지의 경우는 사고가 자유

로와지신 것이다.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일에 어머니도 오빠도 모두 쉽게 남자의 설거지에 적응하고 인정하게 된 것이다(예전엔 왜 안 됐을까?).

이러한 우리집의 변화에 변화를 가속화시킨 사건은 '오빠의 요리는 즐거워'이다. 공지영의 단편을 읽었는데 가사일, 특히 요리에 대한 지면이 많아 이해가 잘 안되더라는 말로 시작된 오늘의 요리는 떡볶이이다. 준비재료는 떡살, 파, 마늘, 양파, 고추장..... 깨끗이 씻어놓았으니 준비완료! 떡살을 씻고, 양파를 썰고, 마늘을 다지는 것부터 물을 맞추고 간을 하는 것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마치 아기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순조롭게 요리는 진행됩니다.

짜자아잔~~.

드디어 시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먹음직스럽게 빠알강게 익은 떡볶이를 한입 가득 베어문 순간, -맛이 어땠을까요?-멍멍한 것이 땀만 해 무언가 빠진듯 한 느낌이었다. 이걸 도대체 몇점을 주어야할까. 오빠의 첫 설습에 대한 감동과 정성을 생각하면 90점 아니 100점을 주어도 시원치 않지만 맛을 보아하니 60점도 후한 격이었다. 모두들 말없이 얼굴만 쳐다볼 때- 드디어 정의의 용사 탄생!- 어머니가 "맛이 어찌...."하시며 부엌으로 가 손을 보아서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야 모두들 오빠에 대한 칭찬과 획기적인 변화에 대해 한마디씩이었다.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할게."하며 일어난 나에게 오빠는 "다음엔 뭘 해 먹을까?"한다. 히.히.히.

이렇게 시작된 우리집 요리강습은 가족이 모이는 토요일 오후로 잡혔고, 부침개 등 간편하면서도 자주 접하는 음식이 주 메뉴였다.

요즘은 세상이 달라지고, 사고도 달라져 남자가 부엌 출입을 하고 음식을 만들거나 설거지하는 일이 많아졌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작지만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서로를 이해하는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기에 더 많은 가정의 오빠, 남동생의 요리강습이 있길 바란다(너무 거창한가). 참 요리를 같이 하며 난

오랜 숙제를 하나 푼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건 이성인 오빠와는 사소하고 정감있는 얘기를 못했는데, 음식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다.

부부교육프로그램 참여기

박종해 / 회사원

정은진씨(봉천에기방 교사) 남편

아내의 에기방 자모의 권유로 망설임 끝에 응락한 [부부교육 프로그램].

명칭이 내게도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만큼, 비록 5회이긴 했지만 매주 수요일마다 땀 뻘근하겠다고 팀장에게 말할 때 그 양반의 "부부생활도 교육받나?"는 말엔 "내용이 좋고 저의 결혼생활에 도움될만한게 많아요."하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팀장은 잘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았지만 요즘의 신혼은 그런가보다 하는 눈치였다.

그렇게 시작한 교육과정은 두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3~4팀이 화기애애한 가운데 계속되었다. 매시간 열심히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숙제도 있었다. 부군이 일 때문에 한두회 빠진 팀은 집에서 전달교육도 했다하니 그 교육열과 진지함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교육내용은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생각보다는 행동이, 행동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내게는 '부부간에 대화하는 방법'이 가장 유익했다. 말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해보면 감정도 누그러지고 좀 더 좋은 분위기에서 서로의 의사를 나눌 수 있기에 5주 동안 의식적으로나마 그렇게 생활한 것이 좋은 경험이 되었다. 부부간의 성에 대해 얘기할 때는 조금 쑥스럽기도 했고, 초반에 선생님들이 모두 여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남녀간의 성차별을 이야기할 때는 다수의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위축되기도 했다.

오늘 저녁엔 무얼, 누구와 해 먹을까? 고민해 보는 것도 즐거운 상상이 되리라 생각하며 두서없는 글을 마칠까한다.

교육과정 내내 따라다닌 비디오 카메라 덕분에 우리는 얼마간의 스타의식도 느낄 수 있었다. 드라마처럼 연출한 것은 아니지만 어색할 때도 있었고 아내와 나의 얼굴이 내가 모르는 사람들 앞에 보여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다.

교육이 끝나는 날 HOF집에서 처음 본 10,000cc짜리 맥주통은 인상적이었다. 양쪽으로 달린 수도꼭지를 틀어, 맥주를 따라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마치 대학생활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 교육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 선생님을 포함하여 여자들은 모두 자신의 일을 갖고 있었고 또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은 아내의 입장을 다른 일하는 아내들의 모습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일하는 아내를 둔 다른 남편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는 못했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을 어느 정도는 모두 느끼는 것 같았다. 나의 아들, 딸 시대에는 남자들이 그런 느낌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

■ 소식과 소식

◀ 지방자치에 관한 보육시설 종사자 지도력 훈련 워크샵 계획

본 회에서는 6월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보육사업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과 지역공론화 작업을 위한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의 강의를 마련하였다.

오는 5월 13일(토) 오전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워크샵의 주제는 '지방자치와 보육사업'으로,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지방재정에 관하여], [보육에 관한 조례제정안] 등 강의와 실기훈련 및 종합토의로 진행된다.

한국여성개발원의 후원으로 실시되는 이 워크샵은 기장 여신도회관 대강당(TEL. 755-7475)에서 마련될 예정이며, 회비는 7,000원(자료집, 중식 제공)이다.

◀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정보제공 개시

보육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으로 상담, 해결해 줄 기관이나 사람이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보육관련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받아볼 수 있게 되는 즐거운 소식이 있다.

본 회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소장 장미경)이 5월부터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이제 한국보육정보연구소가 제공하는 PC통신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보육시설을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음은 물론, 시설선택과 입학 안내 등 어린이집, 놀이방 이용에 따른 안내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육아 토론실', '물어보고 싶어요' 등의 난을 통해 부모, 교사들이 겪는 아동양육의 어려움을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자료 및 정보는, * 보육법과

보육정책, * 아동 교육활동, * 부모 활동, * 교사 등 종사자 알선, * 교사 재교육, * 시설의 설치·운영·행사·홍보, * 보육사업 관련 각 기관·단체 등에 관한 정보이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그 내용에 따라 분당 15원에서 100원의 사용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서비스는 5월 5일부터 천리안에 제공되며, 하이텔은 5월중에 제공될 예정이다.

정보 이용을 원하는 자는 천리안의 경우 TOP 메뉴화면에서 'GO BABY'를 입력하거나 하이텔의 경우, 초기화면에서 'GO BEBO'를 입력하면 된다.

◀ 서울시 국공립 개선안 발표

서울시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안을 발표, 지난 3월 31일 서울시내 각 구청 가정복지과에 구립 어린이집 운영체계에 대한 조정안을 전달하였다.

서울시는 탁아수효에 맞는 구립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체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운영개선 계획의 기본방향으로, * 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97년도까지 완료, * 국공립 직영제를 도입하여 공공성을 확보, *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우수교사 확보 및 보육의 질 향상, * 운영비의 지원확대를 통한 영아 및 장시간 보육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각 구청에 시달하였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민간에 위탁운영해온 3백85개 구립탁아소가 97년까지 구청 직영으로 전환되고 현재 근무중인 민간보육교사 4천여명은 모두 별정직이나 기능직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다. 또한 유치원교사 자격 소지자에게는 6만원의 수당이 주어지나 사회복지사 1급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없는 등 같은 보육교사 1급임에도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어 국공립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나 보육교사 1급 교사들의 반발이나 불평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서울시의 개선안을 두고 정작 직접적 영향을 받게되는 국공립시설측이

나, 보육관련 단체들이 아직 정확한 공식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어, 이들의 입장은 추후사태를 두고보아야 알 수 있을 듯하다.

◀ 전국지방자치유관연구소 및 단체협의회 결성

4월 24일 전국의 지방자치 관련 단체와 연구소들이 한데 모여 협의회를 결성, [전국지방자치유관연구소 및 단체협의회 결성식 및 기념 심포지움]을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을 빌어 가졌다.

이 협의회는 민선단체장시대를 맞이하여 자치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해지는 시기적 요구에 맞추어 각 지역에서 지방자치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연구소와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결성된 것이다.

"한.일 지방자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기념심포지움은, 1) 일본의 모범적 자치단체 운영사례(미야자키 노부미쓰), 2) 일본 주민자치운동의 회원과 전망(모리주미 아끼히토), 3) 민선단체장시대, 지역주민단체의 역할(이기우)의 발제강연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심포지움은 일본 각 지역의 지방자치 관련 민간연구소 간에 협의 채널을 갖고 있는 일본지방자치종합연구소와 한국의 협의회가 공동개최한 것으로 한·일 지방자치의 현황과 과제를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교육운동 관련 월례강좌

지난 3월 30일(목) 오후 6시, 여성평화의 집 지하강의실에서는 본 회 주최로 교육운동과 관련한 월례강좌가 진행되었다.

이날 강사로선 이부영선생님(전교조 부위원장)이 참석하여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교육운동의 역사를 강의해주셨으며, 본 회 소속 어린이집 교사 30여명이 참석하여 강의를 들었다.

월례강좌는 교육운동과 관련하여 총 3회 진행될 예정이며, 다음 월례강좌는 4월 27일

(목) 오후 6시 교육운동의 범주와 조직론에 대한 강의(이수호 전교조 서울지부장)가 마련된다.

◀ 광주시 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창립

서울, 전국연합회의 창립 이후 광주광역시에서도 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이하 민보련)이 창립되었다.

광주시 민보련은 지난 4월 8일 광주 카톨릭센터 회의실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올바른 보육정책의 실현과 양질의 보육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하였다.

이날 창립대회에서는 광주시 민보련 준비위원장으로 수고해온 김혜영(사랑놀이방 원장)이 광주시 민보련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사람들

* 주소가 바뀐었습니다.

추운 바람과 얼어붙은 땅이 스스로 녹아버리는 봄이 오니까 여러 시설이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전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군산 헤트는 동산

군산시 산복동 3597-1 스승의 집 1층

☎ 0654)63-0962

- 오손도손에기방

성동구 행당2동 317번지 가건물 C-101호

☎ 296-2272

- 새싹들의 방 어린이집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514-12 2층

☎ 032)429-6309

★ 축하하셨습니다.

90년부터 사방팔방을 기웃거리며 해송아기 등지의 자원활동가이자, 지탁연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던 김광민씨(재일교포 3세)가 신변을 정리하고 4월 16일(일) 일본으로 출국하셨습니다.

오사카에서 동포들의 민족교육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민족교육추진협의회」의 상근간사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네 아이들] 최초 해외특파원이 될 듯한 김광민씨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기대하며, 건강하세요!

연합회 4월 일지

- 4/ 1 영아탁아모임
구로지역 교사 합숙
(오윤정 교육부장 참석)
- 4 편집회의
- 6 집행위 회의
전국 교사연수 기획회의
- 7 "밖으로 나가놀자" 소모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모임
- 8 그림책 소모임
- 10 '어린이권리 연대회의' 집필진 모임
- 11 소모임 추진위
지방지대의
어린이날행사 기획회의
- 12 민간복지법 대책모임
"밖으로 나가놀자" 소모임
- 13 서울경인지역 대표자회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모임
- 14-15 전국민보련 임원교육 참가
- 14 일본의 탁아제도와 교육에 관한 강좌(부산지역-강사 오윤정 교육부장)

- 4/15 "어깨동무" 놀이 한마당
- 18 여연 경제사업 정책회의
어린이날행사 기획회의
- 19 교육연구부
- 20 집행위 회의
편집회의
- 21 교사연수 기획회의
교육단체 연석회의
- 22 "밖으로 나가놀자" 소모임
- 24 전국지방자치유관연구소 및 단체협의회 결성식 및 기념 심포지움
'어린이권리 연대회의' 집필진 모임
- 25 어린이날행사 기획회의
- 26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3차 모임
- 27 제2회 월례강좌
- 28 그림책 소모임
- 29 서울경인지역 자원활동가 연대회의
경남 민보련 창립대회 참석

■ 탁아계 풍향

◀ 어린이날 행사 안내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지탁연을 비롯한 7개 교육관련 단체에서 '새날을 열어갈 아이들의 한마당'이라는 제목 하에 올해로 다섯번째 행사를 갖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회 새날을 열어갈 아이들의 한마당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장소 : 서울교대 전역
시간 : 95년 5월 5일 10:00 - 16:00
참가비 : 어린이 무료, 어른 3,000원
내용 : 공연마당
실외놀이마당
유아마당
전시마당
올바른 먹거리문화 장터
어린이 건강진단 및 상담

주최 : 지탁연,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어린이도서관연구회, 놀이연구회, 소꿉놀이, 서울교대 총학생회

◀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토론회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방과후 아이들:교육과 보호,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로 기념토론회를 연다.

기혼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핵가족화가 진전되면서 미래사회의 기둥인 아동들이 방과후에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거나 유해환경에 방치되기 쉽고, 또한 콩나물교실에서 다양한 기능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면서 국민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라는 원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까닭에 토론회를 마련하였다는 것이 주최측의 개최취지이다.

일시:5월 2일(화)3:00-5:30
장소:종로성당 3층강당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

내용 :

- 주제발표1> 방과후 아동보호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 주제발표2>방과후 아동의 현실과 민간공부방의 사업전망
- 주제발표3>방과후 아동교육프로그램의 방향에 대하여

◀ 지방자치에 관한 보육시설 중사자
지도력 훈련

지탁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보육과 관련한 지방자치 워크샵을 마련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시 : 5월 13일(토) 10:00-18:00
장소 : 기장 여신도회관 대강당(755-7475)
주제 : 지방자치와 보육사업
참가비 : 7,000원(차료집, 중식 제공)
주최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후원 : 한국여성개발원

내용 :

- 제1강> 지방자치와 주변참여
(황주석 광명YMCA 총무)
- 지방행정 및 지방의회 구조와 역할
- 주민운동의 의의와 활동원칙
- 제2강> 지방재정에 관하여
(-지방예산 확보 요구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자치실무연구소)
- 지방예산 편성시기(일정) 및 예산확보 요구활동시 관여시기
- 지방재정 구조 및 기본지식
- 제3강> 보육에 관한 조례제정안
(이기우 교수)
- 모범 조례안 발표 및 설명
- 조례제정에 대한 기초이해(조례통과 과정 및 일정, 청원시의 기본상식)
- 실전훈련 및 종합발표>
- 조례제정작업
- 예산확보 요구활동

◀ 이대 현장연구 심포지움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에서는 [도시 저소득층 여성의 자립과 조직활동]이라는 주제로 현장연구 심포지움을 갖는다. 이날 주제발표 "도시 저소득층 여성의 자립과 조직활동"과 사례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일시 : 1995년 5월 2일(화) 14:00-16:20
장소 : 이화여대 인문관 111호 (대회의실)
주최 :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360-3225*8)

◀ 「열쇠 따르릉 전화친구」 개설

부스러기 선교회는 딸벌이 부모의 자녀, 특히 방과후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은 빈민지역 「열쇠아이들」을 대상으로, 전화로 친구가 돼주는 상담전화 「열쇠 따르릉 전화친구」를 5월 15일 개설한다.

이 전화는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과 두려움에 대한 전화통화이나 어린이가 아프거나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학교에서 책이나 준비물을 잊고 갔을 때 올바른 정보와 구체적인 도움을 준다. 문의 365-1265

◀ 특수·재활교육

수서종합사회복지관내의 무지개학교에서는 만8세~18세의 정신지체, 자폐아동을 대상으로 주4회 특수/재활 교육과 월 1회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한다.

문의 459-5504

◀ 그림책 원화전시

(주)웅진출판과 도서출판 보리(주)에서는 책, CD-ROM 타이틀, 애니메이션과 함께 보는 그림책 원화전시회를 5월2일-8일까지 롯데화랑(롯데백화점 본점 7층)에서 연다.

문의 766-6563(웅진), 323-2653(보리)

◀ 심리·발달 등 무료검사

비손 조기교육원(원장 조정환)은 장애 영아(0-3세)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교육을 위하여 심리 발달검사, 사회성검사, 교육진단, 교육상담 등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로 실시한다.

문의(032)875-6402

◀ 가정의 대형쓰레기 처리 무료로 애주는 자원재활용협회

쓰레기종량제의 실시로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는 대형쓰레기의 처리를 해결해줄 민간단체, 전국재활용협회가 출범하였다. 전국에 18개 지부를 둔 이 협회에서는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료운반 및 수거처리를 해주며, 이 대형쓰레기들은 전문기술자들의 수리를 거쳐 중고시장에서 판매되거나 러시아, 중국, 동남아시아, 남미 등으로 수출되기도 한다.

이 협회를 이용하려면 사는 곳과 가까운 지부에 전화를 하면 된다.

◀ 전국자원재활용협회 지부연락처

지역	전화번호
서울서초	02-521-7885
서울노원	02-938-4182
서울용산	02-703-0123
부산금정	015-522-2213
부산동구	015-325-2817
대구	053-426-8236
대전	042-633-6067
광주	062-268-1552
경기고양	0344-977-8377
경기안양	0343-25-6601
강원동해	0394-521-0303
강원원주	0371-48-4808
충북	0431-211-5654
전남	0662-81-4848
경북	0561-761-4408
경남	0551-56-1562
울산	0622-60-8969
제주	064-57-3126

■ 벼룩시장

* 벼룩시장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싶은 익이나 함께 하고 싶은 모임, 뽕뽕교한 등 여러분의 각종 정보를 본당과 내용에 관계없이 받고 있습니다. 정보를 주시고 자 하는 본은 지체없이 편집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를 구합니다. 본 회 소속 어린이집에서 활기찬 보육활동을 함께 하고자 하는 의욕한 교사를 구합니다. 희망하시는 본은 본 회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아끼는 게 별건가요? 농촌에 어린이집이 세워지고 재정이 안정되면 그것도 농촌을 지키는 일이지요. 그렇다면 칫솔 언제요? 농촌탁아소 재정마련을 위한 칫솔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품질 보장, 가격은 한셋트(4개입)에 2,500원입니다. 대금미납하신 분들은 속히 지불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좋은 사람 하나 없을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네요. 우리가 그토록 인기 없는 중이야... 어쨌든 이걸 꼭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각 해 드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덕분에 우리 편집부도 리본 한번 해보자구요!!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	지역보육운동, 아직도 못보셨구요? 일본 보육운동의 산 증인 스즈키 쇼조 선생님의 교육관을 놀이, 가정, 지역, 인권 등의 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이와 생활하는 보육교사의 필독서! 더 늦기 전에 구입하세요. 문의는 연합회로. 판매가 : 5,000원
♥ 소식지 통람본이 나왔습니다. 92년 5월 첫발행이었던 제1호부터 94년도 12월호까지 통권 26호의 '우리네 아이들'이 92·93·94년도 별 3권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본은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각권 20,000원 1세트(3권입) 50,000원	꺼리 마음, 글 마음 "우리네 아이들"을 채워줄 귀한 이야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활에서 보고 느낀 거나 보육활동을 하면서 제기되는 생각들, 기타 모든 내용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직접 글로 써주시면 더없이 고맙지요.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
◆ '95 보육사업지침 판매 아직도 보육사업지침을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 보육사업지침을 추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께선 지금 곧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판매가 : 4,000원	보육사업 하려면 이 책들은 읽어라... 아동보육사업 경영경제론 착인판매 아동보육사업의 경영경제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총괄, 체계적으로 수록한 [영유아총서 : 아동보육사업 경영경제론 (이석무 저, 해화당, 정가 11,000원)]을 정가보다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 희망자는 본 연합회로 연락하거나 직접 방문구입을 하면 됩니다. 판매가 : 10,000원(외부) 9,000원(내부, 자료회원)

■ 편집부에서

* 여러분의 이야기 고맙습니다.

[우리네 아이들]의 편집이 예전보다 훨씬 깔끔해졌다는 이야기를 여러 분들에게서 들었습니다. 발행시기, 갖은 실수 등을 실토할 때마다 다음에는 보다 좋은 소식을 내겠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보기에 좋아졌다는 이야기, 내용이 알차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나니 이전보다 훨씬 의욕이 생깁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반응을 보여주시면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 이쁜 얼굴을 보내주세요.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의 표지사진을 공모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주변에서 찍은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을 담은 사진이면 됩니다.

보내주신 사진은 반환이 가능하며, 사진공모에 응해주신 분이나 어린이집에는 작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신입 편집부원을 모집합니다.

항상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편집부에서는 [우리네 아이들]의 내용을 보다 알차고 풍부하게 담을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과 애정을 투자할 신입 편집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택연 소속 어린이집의 전, 현직 교사나 기타 보육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이들의 참여 바랍니다.

* 자료회원 회비를 받았습니다.

6개월 구독 : 김정옥

1년 구독 : 김지혜, 송정아, 김금자

님의 자료회비를 받았습니다.

구독기간이 마감되었거나 구독신청 후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들이 더러 계십니다. 필히 "우리네 아이들" 계좌번호로 자료회원 회비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금 받았습니다.

김일명님의 귀한 정성 받았습니다. 본 연합회의 활동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관심 기울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 교회권님께서 입금을 하여주셨는데 어떤 내용의 금액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연락주세요.

* 무슨 기척인가

너울 너울

포그락 포그락

바람결 따라 내려앉는

목련의 하얀 소리.

미련없이 저버리는 흰 빛

그 일에 넋을 빼다

4월이 간다.

- 양

* 일은 별로 안하는데 편집후기 쓸 날은 꼬박꼬박 돌아오니 심히 마음이 괴롭다. 다음달에는 마음 편히 편집후기 쓰게 되기를 기대하며...

- 회연

* 또 편집하는 날인가 보다.

이 아심한 밤에 전화가 온 걸 보니

매달

늘어만가는 편집후기가

[우리네 아이들]을 살찌우게 하는건지?

작은 반성을 해보는 밤이다.

- 해민

* 사람들의 이야기가 고마워지는 4월호가 되기를...

- 해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려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는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보육시설종사자와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합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 영유아 교육의 이론 및 실제프로그램과 보육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싣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 정기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구독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본 연합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는 뜻으로 좋은 내용, 알찬 정보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 자료회원이 되시면

- 1) 소식지 '우리네 아이들'을 매달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 '우리네 아이들'외 본 회에서 제작하는 각종 자료집 및 책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원가액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3) 본 회에서 주최하는 여러 교육과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회원 신청은

- 1)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전화연락을 주시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2) 우편발송시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실 분의 성함과 직업, 나이,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입하시고 어떻게 '우리네 아이들'을 보시게 되었는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3) 신청후 회비는 다음으로 송금해주시면 됩니다.
- 4) 송금 후에는 반드시 연락을 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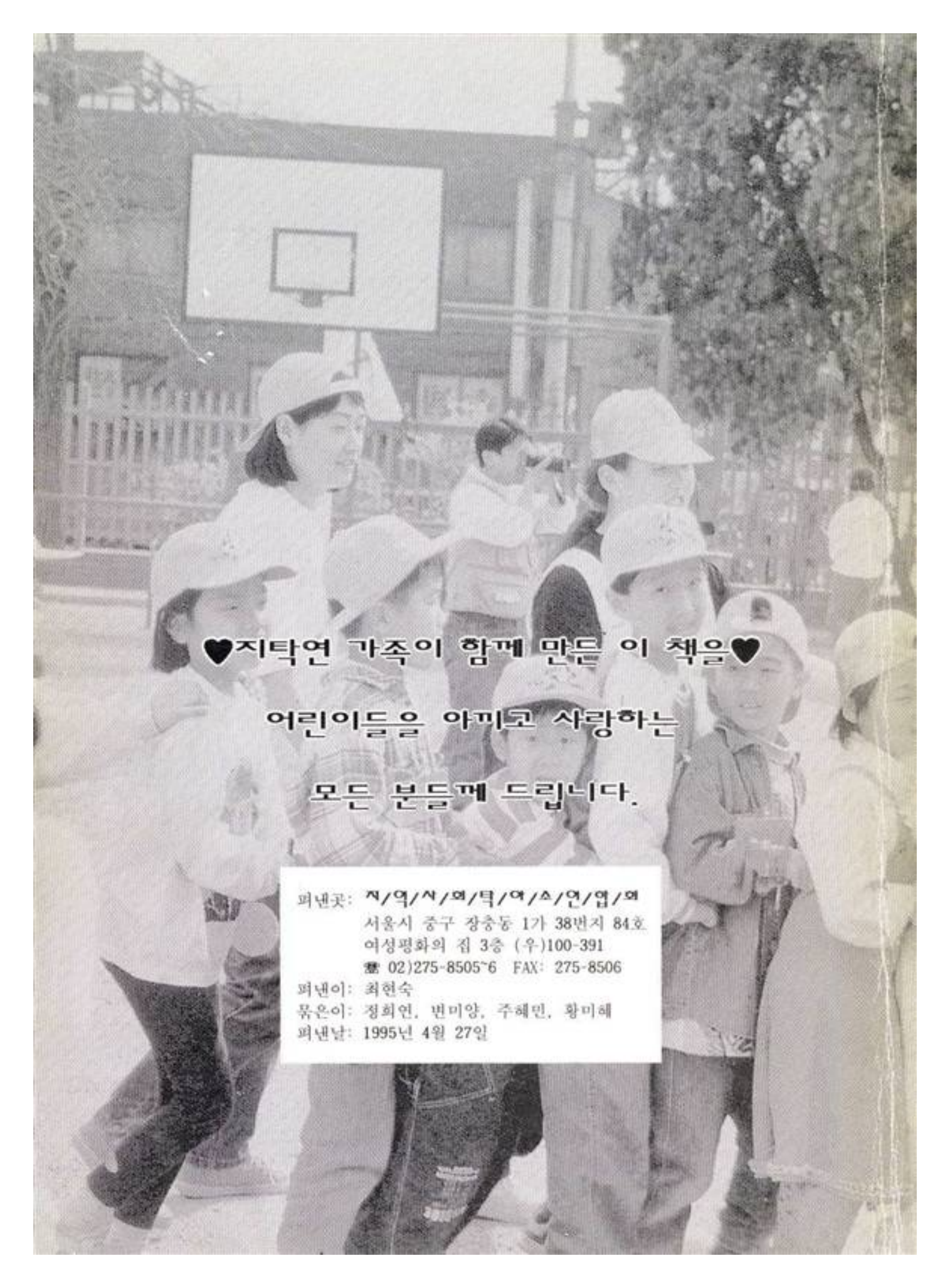
다 음

신청접수: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우리네 아이들'편집부 알
☎ 275-8505~6

송금구처: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희연

(6개월 구독 13,000원 1년 구독 25,000원)



♥지탁연 가족이 함께 만든 이 책을♥

어린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펴낸곳: 지/역/사/외/탁/여/소/연/업/외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번지 84호
여성평화의 집 3층 (우)100-391
☎ 02)275-8505~6 FAX: 275-8506

펴낸이: 최현숙

목록이: 정희연, 변미양, 주혜민, 황미혜

펴낸날: 1995년 4월 27일